

M45-23 / 2002. 7

월간
세계농업뉴스

제23호 (2002년 7월)

『세계농업뉴스』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http : //www.krei.re.kr](http://www.krei.re.kr))의
『세계농업정보』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를 월간으로 발행한 것입니다.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태곤 taegon@krei.re.kr

TEL 02-3299-4241 / FAX 02-968-7340

목 차

I. 농업 농정 동향

1. 미국 2002년 농업법의 소득안전망제도 3
2. 미국 2002년 농업법의 환경보전계획 14
3. 미국 농업부 2003년도 예산 개요 19
4. 일본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입장 22
5. EU 2001년도 농업소득 전망치 30
6. EU 식물유전자 자원 국제협약 가입결정 34
7. EU, 스페인의 유기농 표시제에 이의제기 36
8. 프랑스, 국별 식품소비태도 조사결과 발표 37
9. 프랑스 농민단체, 농정총괄부서 신설 제안 39
10. 영국 농촌경영체지원사업으로 농촌활성화 41
11. 영국 축산쓰레기 이용하여 전기생산 46
12. 스위스 가축이동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47
13. 덴마크 가축전염병 박멸에 도전 49
14. 베네룩스 3국의 유기농식품 시장동향 52
15. EU 불법벌목방지 위해 인증시스템 도입검토 64
16. 지속가능한 임업을 위한 삼림인증제도 66
17. 스웨덴 삼림인증제도 정착추진 72
18. 네덜란드, 지구 숲 살리기 운동 개최 76


II. 국제기구 논의동향

1. WTO 농업모델리티 협상동향 (2) 81
2. OECD 회원국의 농정평가보고서 발표 86
3. OECD 2001년 한국농업정책 평가 88

III. 세계 식료수급 정보

- 세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2002. 6) 99

IV. 통계자료 113



농업 농정 동향

미국 2002년 농업법의 소득안전망제도
미국 2002년 농업법의 환경보전계획
미국 농업부 2003년도 예산 개요
일본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입장
EU 2001년도 농업소득 전망치
EU 식물유전자 자원 국제협약 가입결정
EU, 스페인의 유기농 표시제에 이의제기
프랑스, 국별 식품소비태도 조사결과 발표
프랑스 농민단체, 농정총괄부서 신설 제안
영국 농촌경영체지원사업으로 농촌활성화
영국 축산쓰레기 이용하여 전기생산
스위스 가축이동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덴마크 가축전염병 박멸에 도전
베네룩스 3국의 유기농식품 시장동향
EU 불법벌목방지 위해 인증시스템 도입검토
지속가능한 임업을 위한 삼림인증제도
스웨덴 삼림인증제도 정착추진
네덜란드, 지구 숲 살리기 운동 개최

미국 2002년 농업법의 소득안전망제도

1. 직접지불(direct payment, DP)

1.1. 주요 변화

2002년 농업법은 생산자유직접지불(production flexibility contract(PFC) payment) 혹은 AMTA 직접지불을 대체한 고정직접지불(Fixed direct payment)을 규정하고 있으며, 밀, 옥수수, 보리, 수수, 귀리, 면화, 쌀에 대한 지불단가(payment rate)를 고정시켰다. 한편 대두, 기타 유지종자, 땅콩 등은 2002년 농업법에서 새롭게 도입한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1.2. 관련 규정

농민과 해당 토지소유주들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매년 고정직접지불을 받게 된다. 농민들이 받을 수 있는 직접지불 보조금액은 해당 기준 작물에 대한 지불단가, 지불단수(payment yield), 기준면적의 85%에 해당하는 지불면적(payment acre)에 의해서 결정된다.

농민들은 정책 대상 작물인 밀,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쌀, 면화, 대두, 유지종자, 땅콩 등에 대한 직접지불을 받기 위해서는 2002-07년 동안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2002년 농업법은 농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기준면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첫째, 기준면적이 가용

경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2002년도 PFC 직접지불 대상이 될 수 있는 품목의 계약면적에 1998-01년(작물연도 기준) 동안의 유지종자 평균 재배면적을 추가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선택하거나, 둘째 4년 동안의 평균 재배면적을 반영한 면적에, 1998-01년(작물연도 기준) 동안 기후조건 악화로 인해서 경작하지 못한 재배면적을 추가하여 기준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개별 농민들이 생산중립 고정직접지불(fixed decoupled payment)이나 가격보전직접지불(counter-cyclical payment) 대상 품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두 선택권 중에서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땅콩에 대한 기준면적은 총 기준면적이 가용 농경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보조금은 기준면적의 85%에 달하는 지불면적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2002년 농업법은 농민들이 재배할 작물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참여하는 농민들은 과일이나 채소를 제외한 작물을 전체 농경지에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농경지는 농업용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농민들은 환경보전 및 습지보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002년 농업법은 과거 PFC 직접지불 대상 작물에 대한 지불단수를 종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가령, 보조계획에 추가된 대두나 기타 유지종자의 지불단수는 1998-01년 동안 농가의 평균단수에 1981-85년 동안의 전국 평균단수를 곱한 값을 1998-01년 동안 전국 평균단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표 1 직접지불 단가

단위: 달러

품목	밀 (부셀)	옥수수 (부셀)	수수 (부셀)	보리 (부셀)	귀리 (부셀)	면화 (파운드)	쌀 (부셀)	대두 (부셀)	유지종자 (파운드)	땅콩 (톤)
단가	0.52	0.28	0.35	0.24	0.024	0.0667	2.35	0.44	0.008	36.00

자료: ERS/USDA

한편 2002년 농업법은 직접지불 보조금 상한을 해당 작물연도에 개인당 4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으며, 3경영체 규정(three-entity rule)을 종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3경영체 규정에 따라, 2002년 농업법은 해당 농민에게 첫 번째 경영체에서는 보조금 상한 전액을 보조하고, 이 농민이 관여하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영체에서는 보조금 상한의 50%까지 보조하게 된다. 또한 3년 평균 총소득이 250만 달러 이상인 농민들은 총소득 대비 농업소득의 비중이 75% 미만일 경우 직접지불 대상에서 제외된다.

1.3. 경제적 의미

고정직접지불은 특정 작물의 생산과 작물의 가격 및 생산액과 연계되지 않는다. 즉, 재배할 작물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농민들이 고정 직접지불 대상 작물을 생산하도록 제약하지 않는다. 농민들은 특정 작물에 구애받지 않고 예상 시장가격이나 가변 생산비용에 근거하여 재배할 작물을 결정하게 된다.

고정직접지불의 경제효과는 1996년 농업법상의 PFC 직접지불 효과와 유사하다. 고정직접지불은 농가소득을 증가시킨다. PFC 직접지불은 농가소득을 증가시키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작물생산을 증가시키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농민들에게 2002년 기준 지불면적을 1996년 수준으로부터 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새로운 작물이 농가소득안정계획에 새로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농민들은 향후 지불면적을 보다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에 따라 과거 생산경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농산물을 확장하여 생산하도록 유도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PFC 직접지불에서처럼 고정 직접지불의 생산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이다.

2. 가격보전직접지불(counter-cyclical payments)

2.1. 주요 변화

가격보전직접지불은 2002년 농업법에 새로이 추가된 농가소득 안정정책이다. 이 정책은 1998-01년 동안 시행된 특별 시장손실지불(market loss assistance payment)을 개선하여 농민들에게 경기조정적 농가소득 안전대책을 제공하도록 개발된 제도이다. 이러한 가격보전직접지불은 현재 생산수준과는 상관없이 과거 생산경력에 근거하여 보조된다.

2.2. 관련 규정

농민들은 실효가격(effective price)이 목표가격보다 낮을 경우 가격보전 직접지불을 보조받을 수 있다. 가격보전직접지불 보조금액은 지불단가(payment rate), 지불면적(payment acre), 지불단수(payment yield)에 의해서 정해지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지불단가} &= \text{목표가격} - \text{직접지불단가} - \text{시장가격(단, 시장가격} > \text{유자단가)} \\ &= \text{목표가격} - \text{직접지불단가} - \text{유자단가(단, 시장가격} < \text{유자단가)} \\ \text{가격보전직접지불 보조금액} &= [(\text{기준면적}) \times 0.85] \times \text{지불단수} \times \text{지불단가} \end{aligned}$$

농민들은 정책대상 작물(밀,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쌀, 면화, 대두, 유지종자, 땅콩)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등록기간 내에 2002-07년 동안 협약에 가입하고, 기준면적이나 지불단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한편 농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준면적 결정방식은 앞에서 언급한 직접지불 방식과 동일하며, 농민들이 가격보전직접지불 대상 품목을 신청하

기 위해서는 두 선택권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땅콩에 대한 기준면적은 총 기준면적이 가용 농경지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지불면적은 모든 대상 작물에 대한 기준면적의 85% 수준에서 결정된다.

앞에서 언급한 직접지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배할 작물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농민들에게 융통성을 충분히 부여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농민들은 과일이나 채소를 제외한 작물을 전체 농경지에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농경지는 농업용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농민들은 환경보전 및 습지보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002년 농업법은 농민들에게 가격보전직접지불 대상 작물에 대한 지불단수의 결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불단수 결정방식은 첫째, 현행 정책 지불단수 이용방법, 둘째 1998-01년 동안 농가의 평균단수와 정책 지불단수간의 차액의 70%를 정책 지불단수에 합산하여 단수를 조정하는 방법, 셋째 1998-01년 평균 단수의 93.5%를 정책 지불단수로 결정하는 방법 등이다.

표 2 품목별 목표가격

단위: 달러

	2002-03년	2004-07년
밀(부셸)	3.86	3.92
옥수수(부셸)	2.60	2.63
수수(부셸)	2.54	2.57
보리(부셸)	2.21	2.24
귀리(부셸)	1.40	1.44
면화(파운드)	0.724	0.724
쌀(백파운드)	10.50	10.50
대두(부셸)	5.80	5.80
유지종자(파운드)	0.098	0.101
땅콩(톤)	495.00	495.00

자료: USDA ERS

2002년 농업법은 가격보전직접지불의 보조금 상한을 작물연도 마다 개인당 6만 5,000달러로 제한하고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직접지불과 마찬가지로 3경영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3경영체 규정에 따라, 2002년 농업법은 해당 농민에게 첫 번째 경영체에서는 보조금 상한 전액을 보조하고, 이 농민이 관여하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영체에서는 보조금 상한의 50%까지 보조하게 된다. 또한 3년 평균 총소득이 250만 달러 이상인 농민들은 총소득 대비 농업소득의 비중이 75% 미만일 경우 직접지불 대상에서 제외된다.

2.3. 경제적 의미

가격보전직접지불은 시장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을 경우 농가의 소득을 보조하고 안정시키는 정책이다. 가격보전직접지불이 제공하는 혜택을 분배하는 기준은 향후 혜택 분배방식에 대한 농민들의 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 생산수준과 연계된 직접지불은 향후 혜택이 과거의 생산수준과 연계하여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시킨다. 그럼으로써 이런 기대는 현재의 생산수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령, 향후 농가지원정책이 직접지불의 근거인 기준면적을 조정하도록 허용할 것으로 기대할 경우 농민들은 과거에 재배하고 보조받은 작물을 다른 작물로 전환시키는데 매우 소극적일 수 있다. 대신에 농민들은 정책 대상 작물에 대한 영농경력을 쌓으려는 동기가 생길 수 있고 그럼으로써 시장가격의 신호에 따라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 만일 농민들이 향후 농가지원법령이 지불단수를 조정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예상할 경우, 현행 단수에 영향을 미치는 농경지 이외의 투입재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격보전직접지불이 현행 시장가격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이런 직접지불을 위협을 감축시키는 소득안정장치로써 간주할 수 있다.

농민들이 시장신호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고 대신에 향후 정책이 제공하는 예상 혜택이나 정책변화에 의해 과장된 시장신호에 반응하기 때문에 기준면적이나 지불단수를 조정하는 경우 경제적 생산효율성은 감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에 대한 가격보전직접지불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3. 마케팅론(Marketing Loan) 및 용자부족불(Loan Deficiency Payment, LDP)

3.1. 주요 변화

마케팅론 규정은 땅콩, 양모, 모헤어(mohair), 꿀을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밀, 사료곡물, 면화 대상 용자단가(loan rate)는 과거 법정 최대수준으로 상향조정된 반면에 대두, 유지종자 대상 용자단가는 과거 법정 최대수준으로 하향조정 되었다.

3.2. 관련 규정

농업지원청(Farm Service Agency, FSA)은 상품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CC)를 통해서 밀, 쌀,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면화, 유지종자, 땅콩, 모헤어, 양모, 꿀, 병아리콩(chickpea), 렌즈콩(lentils) 등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론 규정과 함께 농산물 담보용자계획(commodity loan program)을 시행하는 기관이다.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농민들은 농산물 담보용자계획을 통해서 생산물을 용자의 담보로 맡기고 생산단위당 특정품목별 용자단가 수준에 따라 정부용자를 보조받을 수 있다. 농민들은 해당 품목을 수확한 이후에 용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농산물 담보용자계획이 제시하는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자비

용(1% 추가된 상품신용공사의 재무성에 대한 대출이자비용)을 추가한 용자단가 수준을 적용하여 상환하는 방법, 둘째, 용자 만기일에 상품신용공사에 계약작물을 현물로 상환하는 방법, 셋째, 대체 용자상환단가(repayment rate) 수준을 적용하여 상환하는 방법 등이 있다.

또한 용자지원계획은 용자부족분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지원될 수 있다. 시장가격이 용자단가보다 낮을 경우 농민들은 보다 낮은 용자상환단가로 농산물 용자금을 상환할 수 있다. 마케팅론 상환단가는 밀, 사료곡물, 유지종자를 대상으로 한 군 공시가격(posted county price, PCP)과 쌀, 면화를 대상으로 한 국제시장가격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정부는 격주로 산출되는 유지종자 이외에 다른 품목의 PCP를 매일 산출하여 공시한다. 또한 면화와 쌀에 대한 국제시장가격은 격주로 발표된다.

PCP나 국제시장가격이 보다 낮은 수준에서 용자금을 상환할 경우, 농민들은 용자단가와 용자상환단가간의 차액인 마케팅론 수익(marketing loan gain)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자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수입도 얻을 수 있다.

농민들은 시장가격이 품목별 용자단가보다 낮을 때 용자부족분(LDP)을 통해서 마케팅론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담보용자금을 대출받아 상환하지 않고도 농민들은 LDP를 통해서 마케팅론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LDP의 용자단가는 군 공시가격이나 국제시장가격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이는 마케팅론 수익과 동일하다. 일부 농산물을 대상으로 LDP 보조를 받고 있는 농민들은 이 농산물을 다른 마케팅론이나 LDP의 담보로써 활용할 수 없다.

가축 대상 초지에 밀, 보리, 귀리, 라이밀(triticale) 등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용자부족분 대신에 사료작물 직접지불(graze-out payment)을 보조받게 된다. 이때 보조금액은 품목별 직접지불계획 상의 지불단수에 초지면적을

표 3 품목별 마케팅론 융자단가

단위: 달러

	2004-03년	2004-07년
밀(부셀)	2.80	2.75
옥수수(부셀)	1.98	1.95
수수(부셀)	1.98	1.95
보리(부셀)	1.88	1.85
귀리(부셀)	1.35	1.33
면화(파운드)	0.52	0.52
쌀(백파운드)	6.50	6.50
대두(부셀)	5.00	5.00
유지종자(파운드)	0.096	0.093
땅콩(톤)	355.00	355.00
등급 양모(graded wool)	1.00	1.00
등급외 양모(nongraded wool)	0.40	0.40
모헤어	4.20	4.20
꿀	0.60	0.60
병아리콩	7.56	7.43
렌즈콩	11.94	11.72
건조콩	6.33	6.22

자료: USDA ERS

곱하여 결정한다. 라이밀에 대한 LDP는 해당 농가의 밀에 대한 지불단가와 지불단수를 활용하여 결정하며, 만일 해당농가에 대한 밀 단수에 관한 자료가 없을 경우 비교가능 한 밀 재배농가의 단수를 활용하여 결정한다.

2002년 농업법은 마케팅론 수익이나 LDP의 지불 상한을 해당 작물연도에 개인 당 7만 5,000달러로 제한하고 있으며, 3경영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3경영체 규정에 따라, 2002년 농업법은 해당 농민에게 첫 번째 경영체에 서는 보조금 상한 전액을 보조하고, 이 농민이 관여하는 두 번째와 세 번

채 경영체에서는 보조금 상한의 50%까지 보조하게 된다. 또한 3년 평균 총소득이 250만 달러 이상인 농민들은 총소득 대비 농업소득의 비중이 75% 미만일 경우 직접지불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들은 밀, 사료곡물, 유지종자를 대상으로 한 군 공시가격 수준이나, 쌀, 면화를 대상으로 한 국제가격 수준에서 증서제도(commodity certificate)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농민들이 상품신용공사의 농산물 담보용자를 신청할 때 담보물로서 증서를 활용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상한 설정에 의해서 계약을 받는 농민들은 이런 규정에 따라서 낮은 용자 상환단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3.3. 경제적 의미

농산물 가격이 해당 품목의 용자단가보다 낮을 경우 농민들은 용자지원 계획을 이용하여 시장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농업부(USDA)의 경제연구소(ERS)는 “Analysis of the U.S. Commodity Loan Program with Marketing Loan Provisions”이란 보고서에서 특정 품목에 대해 예상되는 절대적 또는 상대적 마케팅론 혜택의 중요성에 따라 마케팅론의 효과가 매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장가격이 낮을 경우 마케팅론은 농민들로 하여금 특정 작물을 생산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1999-01년에 대략 5억 달러에서 8억 달러 이상 달하는 마케팅론의 혜택에 따라서, 8개 주요 작물에 대한 총 식부면적이 매년 2-4백만 에이커 정도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상호 품목간의 공급효과는 마케팅론의 혜택뿐만 아니라 상대 수익률에 따라 반응하여 나타나지만, 경쟁 품목간의 경지면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결국 특정 연도에 특정 작물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대다수 효과들은 마케팅론의 혜택이 제공되는 해당 연도에 발생하며, 마케팅론을 지원하지 않아도 될 만큼 시장가격이 상승하는 다음

연도에는 이런 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된다.

2002년 농업법은 용자단가를 밀, 사료곡물을 대상으로 상향조정한 반면, 유지종자, 대두를 대상으로는 하향조정하고 있다. 이처럼 용자단가가 조정됨에 따라서 1996년 농업법상의 용자단가와 비교하여 시장가격이 낮은 수준일 경우 밀이나 사료곡물에 대한 농민들의 재배의향이 과거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자료: USDA ERS
(김상현 ksh3615@krei.re.kr 02-3299-4369 농정연구센터)

미국 2002년 농업법의 환경보전계획

1. 주요 변화

2002년 농업법은 기존의 모든 농업환경정책의 예산을 증액하여 배정하고 있다.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의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보전 및 환경계획에 소요될 총 예산액은 80% 증액된 38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2년 농업법은 농산물 생산으로부터 분리하여 환경민감토지를 보호하는 정책을 꾸준히 확대·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축산업을 포함해서 생산에 이용되는 토지에 대한 보전활동 지원정책들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보전감시계획(Conservation Security Program, CSP)과 초지유보계획Grassland Reserve Program, GRP)과 같은 새로운 보전계획을 통해서 농업환경정책의 목표와 역할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2. 관련 규정

2002년 농업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농업인들은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안된 다양한 자발적인 환경보전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 과거 농업법에서처럼, 2002년 농업법도 농업환경정책의 규모나 범위를 꾸준히 증가

시키는 추세에 있다. 농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환경보전 관리계획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은 연방정부의 환경보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5년 동안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2002년 농업법은 이들 정책에 대한 예산을 60% 증액한 171억 달러 이상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02년 농업법은 기존 환경보전계획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면적을 확대하고,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다. 첫째, 환경보전유보계획(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은 농업인에게 환경민감토지에 대한 장기적인 자원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일정 보조금과 비용분담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계획대상 경지면적의 상한을 3,640만 에이커에서 3,920만 에이커로 상향 조정하였다. CBO의 전망에 따르면 상품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CC)를 통해서 제공된 예산이 향후 10년 동안 15억 달러나 증액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둘째, 습지유보계획(Wetland Reserve Program, WRP)은 농지로 전환된 습지를 복구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장기적인 영구지역권(permanent easements)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2002년 농업법은 이 계획의 보조대상 면적상한을 107만 5,000에이커에서 227만 5,000에이커로 확대하였다. 미 농업부장관은 실행 가능한 최대수준인 25만 에이커를 등록하도록 요청 받고 있다. CBO의 전망에 따르면 상품신용공사를 통해서 지원되는 습지유보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이 향후 10년 동안 15억 달러로 증액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셋째, 환경개선장려계획(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EQIP)은 환경보전 및 개선활동을 하는 축산업자나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기술지원이나 인센티브 보조금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EQIP는 회계연도 2002-07년 동안 상품신용공사로부터 58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 받고, 향후 10년 동안 총 90억 달러를 지원 받을 전망이

다. 지원예산이 1996년 농업법에서는 연간 2억 달러 정도이었던 것에 반해 2002년 농업법에서는 2007년까지 연간 13억 달러로 증액될 것이다.

또한 지하수와 지표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품신용공사의 추가기금이 향후 2002-07년 동안 2억 5,000만 달러가 제공되며, Klamath Basin 지역의 수자원 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5,000만 달러가 배정된다.

넷째, 야생서식지보호장려계획(Wildlife Habitat Incentive Program, WHIP)은 야생서식지를 개발하고 개선하는 토지소유주나 농업인에게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는 정책이다. 2002년 농업법은 상품신용공사로 하여금 향후 10년 동안 소요될 예산지원액을 총 7억 달러 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회계연도 2002년에는 1,500만 달러, 2002-07년에는 3억 6,000만 달러, 2005-07년 동안에는 8,500만 달러를 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섯째, 농지보호계획(Farmland Protection Program, FPP)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와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생산토지를 농업용으로 관리하고, 개발권을 취득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2002년 농업법은 상품신용공사로 하여금 향후 10년 동안 총 9억 8,500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액을 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회계연도 2002년에는 5,000만 달러, 2004-05년에는 1억 2,500만 달러, 2002-07년에는 5억 9,700만 달러를 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USDA는 전반적인 환경보전계획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새롭게 추가된 정책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예산액을 배정할 것이다. 첫째, 보전감시계획(Conservation Security Program, CSP)은 지역 혹은 지방의 현안인 자원문제를 반영하는 토지관리기법을 적용하고 유지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CBO의 전망에 따르면, 상품신용공사의 예산지원을 받는 CSP의 예산지출액은 회계연도 2003-07년 동안 3억 6,900만 달러로 향후 10년 동안 총 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둘째, 초지유보계획(Grassland Reserve Program, GRP)은 200만 에이커에 달하는 초지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상품신용공사를 통해서 2억 5,400만 달러의 예산이 지원될 것이다.

3. 경제적 의미

2002년 농업법은 토지휴경조치에 대한 예산증액에 비해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환경보전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배정하고 있다. 과거 환경보전부문의 예산이 주로 토지휴경조치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최근의 예산배정의 변화추세는 주목할만한 점이다.

2002년 농업법이 CRP와 WRP를 대상으로 향후 10년 동안 30억 달러를 증액한 반면에, 기존의 EQIP와 새롭게 추가된 환경보전감시계획(CSP)을 대상으로는 향후 10년 동안 110억 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추세를 반영하여 농민들은 가능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수준에서 환경보전전략을 개발하여 나갈 수 있도록 폭넓은 선택권과 융통성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환경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증액된 예산지원을 통해서 농가의 환경보전 노력 수준이 꾸준히 증가해야 한다.

2002년 농업법은 토지은퇴계획(land retirement program)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면적을 현재 보다 11% 증가된 400만 에이커로 확대하여, CRP와 WRP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습지복구에 중점을 두어 WRP의 등록 상한을 107만 5,000 에이커에서 227만 5,000에이커로 확대하고 있다. 토지은퇴계획을 확대함에 따라서 2002년 농업법은 농산물 생산량과 가격, 더 나아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농지보호계획(Farmland Protection Program, FPP)에 대한 예산지원이

향후 10년 동안 9억 8,5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며, 이는 지난 1996년 농업법에서 제공한 5,300만보다 거의 20배 증액된 예산액이다. 또한 등록대상 면적에 대한 상한이 철폐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보존될 토지의 규모와 입지는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FPP의 예산은 개발권 취득비용의 50% 정도를 제공하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나 민간단체를 통해서 지원되며, 해당 계획이나 관련 단체가 위치하는 지역의 농지를 보호하게 될 것이다.

자료: USDA ERS

(김상현 ksh3615@krei.re.kr 02-3299-4369 농정연구센터)

미국 농업부 2003년도 예산 개요

미국 농업부(USDA) 베네만(Ann M. Veneman)은 최근 정부가 상정한 세부적인 2003년(회계연도 기준) 농업부 예산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 골자는 농가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원, 국내 안전보장을 위한 지원, 육류검역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국제무역에 대한 지원, 저소득계층에 대한 식량지원 등에 대한 예산 배정이 증액되었다는 것이다. 베네만은 “정부가 발표한 예산은 특정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베네만은 2001년 ‘식료 및 농업정책’(Food and Agriculture Policy)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부의 정책목표를 지원하는 예산이 될 것이며, 이 예산에는 농업정책 지원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추가적으로 735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미 정부의 공약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식물 병충해로부터 국내 식료공급을 보호하고, 식료안전성 계획을 강화하며, 특정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1억 4,600만 달러를 증액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예산은 예기치 못한 대외 위협으로부터 농업과 식료공급을 보호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02년 방위비 예산법에서 제공된 3억 2,800만 달러의 보조재원과 함께 수입품에 대한 보다 강화된 검역, 농산물 및 가축, 식료공급을 위협하는 새로운 질병에 대한 연구 및 실험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증액된 것이라라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3년 예산은 식료지원계획(Food Stamp), 여성·유아·아동을 대상으로 한 영양계획 등 국내 영양지원계획(nutrition assistance programs)에 410억 달러를 배정함으로써 영양공급 안전망 구축에 대한 공약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영양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서 임시채원으로서 20억 달러를 배정하고 있다. 한편 본 예산에는 최소 5년 동안 미국에 거주한 합법 이민자들에 대한 지원계획 자격요건을 개정하고, 신청과정을 간소화시키는 것을 포함한 향후 10년 동안의 식료지원계획에 42억 달러를 추가 배정하고 있다.

회계연도 2003의 예산안에는 2001년에 실제 지출된 예산과 비교하여 6억 달러, 2002년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비교하여 110억 달러 증액된 744억 달러의 재원이 요구된다. 경기침체, 국내안전, 기타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서 실제 지출된 회계연도 2002년 예산은 76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 농업부의 회계연도 2003년 예산의 주요 골자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안전검사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에 대한 2002년보다 2,800만 달러 증액된 9억 500만 달러의 지원

둘째, 수출진흥, 장기 해외시장 개척, 세계 식료안전성 개선을 위해 5,000만 달러 증액된 국제무역정책에 대한 64억 달러의 지원

셋째, 자연자원 및 환경국(the Natural Resources & Environment Agencies)에 대한 61억 달러의 지원. 여기에는 전국산불대책(National Fire Plan)에 대한 지원 15억 달러, 자연자원보전국(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의 보전활동에 대한 3,600만 달러의 증액, 전국에너지대책(National Energy Plan)이나 야생관리활동과 같은 정책을 지원하는 전국산림체계(National Forest System)에 대한 5,000만 달러의 증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넷째, 광우병(BSE)이나 구제역(FMD)과 같은 신종 외래 질병에 대한 질병예방관리전략을 수립하는 연구활동을 포함하여, 최우선 지원 분야에서 현재 진행중인 연구계획을 대상으로 23억 달러의 지원. 기타 연구활동들은 시장기회의 확대, 환경보호, 바이오에너지, 생명공학기술 개발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농촌지역 개발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116억 달러의 지원

베네만은 국가의 최우선 연구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못한 일부 연구사업들이 제외되는 등 일부 부문에서의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계획들을 검토하여, 컴퓨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다양한 관리방안이나 근로자나 소비자들이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술을 관리하고, 제안하는 부서를 지원하도록 예산이 배정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베네만은 “우리는 관련된 계획들이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되어야 하며, 소비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농민이나 목축업자들을 지원하는 이번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와 공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자료: <http://www.usda.gov/news/releases/2002/02/0031.htm>
(김상현 ksh3615@krei.re.kr 농정연구센터)

일본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입장

1. 자유무역협정 체결동향

자유무역협정(FTA)은 특정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배타적인 관세 철폐 등을 통하여 무역을 자유화하는 협정이다. FTA에서 무역 자유화란 WTO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세의 단계적인 감축이 아니라 관세의 완전 철폐를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1980년대 후반이후 양자간 및 지역내 각국간 FTA를 체결, 관세 및 수량제한을 철폐하고, 더욱이 투자 및 서비스무역을 자유화하여 밀접한 경제관계를 구축하는 활동이 현저해지고 있다.

이러한 협정에는 ‘자유무역협정’과 ‘관세동맹’이 있으며, 양자를 포함하여 ‘지역무역협정’이라고 한다.

양자 모두 가맹국간의 무역에 대해서 관세, 기타 제한적 통상규제를 철폐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각 가맹국의 역외 국가에 대한 관세, 기타 통상규칙은 변경되지 않고 유지되나, ‘관세동맹’에서는 각 가맹국이 역외국가에 대해 공통관세를 설정하는 등 역외국가에 대한 각 가맹국의 통상규칙이 통일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 차이이다.

표 1 지역무역협정 체결수

1960	1990	2001
2	30	156

표 2 주요 지역무역협정

지역	지역무역협정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유럽연합) <관세동맹 : 15개국>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 : 노르웨이, 스위스 등 4개국> ○ CEFTA(중구자유무역협정) <폴란드, 체코 등 6개국> ○ EU와 EFTA, EU와 중동구, EU와 지중해제국과의 FTA
C I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국가공동체(CIS)경제동맹 <FTA : 구소련제국>
북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남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CM(중미공동시장) <관세동맹 : 과테말라, 본둘라스 등 5개국> ○ CARICOM(카리브공동체) <관세동맹 : 자마йка, 가이아나 등 13개국 1지역> ○ 안데스공동체 <관세동맹 :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 5개국> ○ MERCOSUR(남미공동시장) <관세동맹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FTA(아세안자유무역지역) <FTA : ASEAN가맹 10개국> ○ SAPTA(남아시아특혜무역지역) <관세상호인하협정 :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몰디브>
오세아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R(경제협력개발협정) <FTA : 호주, 뉴질랜드>
중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CC(중동협력회의) <관세동맹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수장국연방 등 6개국>
아프리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EMOA(서아프리카경제통화동맹) <관세동맹 :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등 8개국> ○ UDEAC(중부아프리카관세경제동맹) <카메룬, 콩고 등 6개국> ○ COMESA(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 <상호관세인하 : 이집트, 케냐 등 22개국> ○ SADC(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 <FTA : 남아프리카, 짐바브 등 14개국>

최근, FTA를 비롯한 지역무역협정이 증가하고 있다. 주요지역의 FTA는 <표 1>, <표 2>와 같다. 그 내용은 보면, 관세 철폐만이 아니라 서비스무역 자유화, 투자 자유화, 과학기술협력, 인재 육성 등을 포함하는 등 다양하게 체결되고 있다.

2. 지역무역협정에서 농산물의 취급

지역무역협정에 관해서는 GATT 24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사자 국가간 사실상의 무역에 대하여 관세나 제한적 통상규칙을 폐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은 명확한 국제기준이 없다. 그래서, 당사자 국가의 국내사정이 고려되어 대부분의 지역무역협정에서는 농산물을 비롯한 예외품목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외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 3개국간에 1994년부터 확대 실시되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예외조치를 인정하고 있다. 즉, 미국·멕시코간에는 단계적으로 관세철폐를 단행하는 것 외에는 예외조치가 없으나, 미국·캐나다간, 캐나다·멕시코간에는 단계적으로 관세 철폐를 도모하면서, 농업사정을 감안하여 다수의 예외품목을 인정하고 있다<표 3>.

또, 2000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EU·멕시코간 FTA에서도 농산물에 대해서는 5단계로 나누어서 관세철폐를 단행하고, 관세할당품목도 인정하고 있다<표 4>.

표 3 NAFTA 농산물 관세철폐 예외품목

	관세철폐 예외품목
미국·캐나다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정발효(1989)후, 즉시, 5년후, 10년후, 15년후 등 단계별로 나누어서 농산물 관세를 철폐 ○ 예외 품목 (미국측) 유제품, 땅콩, 땅콩버터, 사탕, 사탕함유품, 면 (캐나다측) 유제품, 가금육, 계란, 마아가린
미국·멕시코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정발효(1994)후, 즉시, 5년후, 10년후, 15년후 등 단계별로 나누어서 농산물 관세를 철폐 ○ 예외품목 없음
캐나다·멕시코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정발효(1994)후, 즉시, 5년후, 10년후, 15년후 등 단계별로 나누어서 농산물 관세를 철폐 ○ 예외 품목 (양국모두) 유제품, 가금육, 계란·계란제품, 사탕·사탕함유품

표 4 EU·멕시코간 FTA의 농산물 관세철폐 예외품목

국가별 조치내용	대상품목	농산물수입총액 대비 비율(%)
<p>멕시코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효즉시(2000) 관세철폐 (2) 3년후(2003) 관세철폐 (3) 8년후(2008) 관세철폐 (4) 10년후(2010) 철폐 (5) 2003년이후 협의 (6) 관세할당 품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 인삼, 완두콩, 아몬드, 레몬, 김 등 ○ 홍차, 후추, 카레분 등 ○ 대두, 체리, 생강 등 ○ 살구, 사과, 배, 자두 등 ○ 쌀, 소맥, 옥수수, 유제품, 쇠고기, 사탕 등 ○ 사탕과자 등 	<p>25</p> <p>4</p> <p>11</p> <p>2</p> <p>57</p> <p>1</p>
<p>캐나다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효즉시(2000) 관세철폐 (2) 3년후(2003) 관세철폐 (3) 8년후(2008) 관세철폐 (4) 10년후(2010) 철폐 (5) 2003년이후 협의 (6) 관세할당 품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피, 홍차, 후추, 완두콩 등 ○ 키위, 카레분, 토끼고기 등 ○ 양파, 카리플라워, 가지, 맥아 등 ○ 상치, 당근, 김, 양고기 등 ○ 유제품, 쇠고기, 토마토, 오이, 과일 등 ○ 계란, 벌꿀, 오렌지주스, 마아가린, 과당 등 	<p>55</p> <p>6</p> <p>12</p> <p>1</p> <p>10</p> <p>16</p>

3. 일본의 FTA 논의동향

일본은 2002년 1월 싱가포르와 광범위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일본·싱가포르 신시대경제연계협정’에 서명, 일본 최초로 FTA를 체결한 셈이다. 이 협정은 현재 무관세인 농림수산물 500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림수산분야를 하나의 부문으로 망라하여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의 자유화를 요구하는 GATT 24조와 정합성을 유지한다고 하고 있다.

일본·싱가포르 경제연계협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대부분의 화학제품, 석유제품, 섬유 등의 관세를 신규로 철폐하고, 관세철폐품목을 대상으로 양자간 세이프가드를 도입하여 관세철폐 품목의 수입이 증가하는 경우 관세율을 실행세율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관세철폐 품목에 대해서는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원산지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상업용의 인적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학생, 교수, 공무원 등의 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셋째, 서비스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넷째, 양국의 투자가가 상호 투자하기 쉽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양국과 아시아 금융자본시장을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은 싱가포르 외에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하기 위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상대국은 한국을 비롯하여, 멕시코, 아세안, 태국, 필리핀, 호주, 칠레, 대만 등이 있다. 특히, 한국과 양국 재계의 대표를 구성원으로 하는 한일FTA비즈니스포럼이 FTA를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는 공동선언문 발표를 계기로, 2002년 3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정부 주체로 산학관연구회를 설치하여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제1차 연구회를 7월 9일, 10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 정부간 교섭을 위하여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4. 농산물 취급에 대한 일본의 입장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FTA에서 농산물은 예외적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일본도 비슷한 입장에 있다. 현재 일본이 주장하는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구조개혁 추진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은 FTA 체결시에 다음 3가지 점을 중시하고 있다.

첫째, FTA를 추진할 때에는 이해득실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WTO의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하고, 이것을 보완하는 체제로서 FTA를 통하여 경제협력이나 인재육성 등 폭넓은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인 경제연계협정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을 배경으로 다른 나라와 계속 FTA를 체결하여 배타적인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일본만이 제외되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FTA에 대한 대응이 이와 같은 현실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특정 상대국과 FTA를 체결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익과 손실이 발생하는가를 충분히 검증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는 입장이다.

둘째, FTA가 일본의 식량안보보장이나 농업구조개혁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순수입국인 일본 시장은 이미 충분히 개방되어 있다. 즉, 일본의 농산물 평균관세율은 12%이고, 이것은 수출 대국인 미국(6%)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지만 EU(20%)나 아르헨티나(33%)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 수입액에 비해 일본의 농산물 수출액은 극히 적은 편이다. 현실적으로 FTA에 의하여 일본의 농산물에 직접적으로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표 5 주요 국가의 관세율 비교, 2000년 협정세율

	농산물 평균관세율(%)	전체품목 평균관세율(%)
일본	12	5
미국	6	4
E U	20	7
캐나다	5	5
호주	3	10
스위스	51	9
노르웨이	124	26
한국	62	18
태국	35	29
인도	124	67
아르헨티나	33	31

또, FTA에 의한 농산물 관세철폐는 협정상대국과 다른 대일 수출국간에 수출경쟁력의 불균형이 생기는(무역전환효과) 것을 통하여 미국을 비롯한 기존의 주요 수출국간에 무역마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도 유의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근거하여, FTA에 대응할 때에는 일본의 식료안보에 충분히 배려하고, 동시에 UR 협정에 근거한 무역자유화, 농가 고령화라는 상황을 고려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업구조조정에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향후 FTA를 교섭하는 경우에 식료안보의 중요성을 비롯한 일본의 입장에 대하여 교섭상대국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가능한 한 일본 농업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FTA에 대하여 교섭하는 경우 앞에서 언급한 농업이나 농산물무역·관세 설정, 일본의 입장에 대해 상대국에게 충분한 이해를 얻을 필요가 있고, 관세이외의 분야에서 실시 가능한 정책협력, 기술협력 등에 대하여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대응해 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구체적인 교섭이 진행되지도 않는 단계에서 “일본이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농업분야를 희생해야 한다”는 형태로 함부로 국내 대립을 자극하는 논의는 상대국과의 협상전력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FTA 협상시에는 구체적인 상대국간에 어떠한 이익과 손실이 발생하는가를 충분히 검증한 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일본 정부는 싱가포르와의 FTA에서 농산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세 철폐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WTO 협상에 맡긴다는 주장을 관철했던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한일간 FTA 논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WTO의 다자간 체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FTA의 경제협력이나 인재육성 등으로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농산물은 실질적인 관세를 유지하면서 무관세 품목만을 협정에 추가하는 ‘싱가포르방식’을 노리고 있다.

농산물의 완전자유화는 한국에서 신선채소 등의 수입이 대폭 증가, 양국간 무역경쟁이 격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 농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의 예외조치가 불가능하면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특례조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일부에서는 농산물 평균관세율이 일본 12%, 한국 62%인 점을 감안하면 일본이 유리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과일, 차, 가공식품, 유기농산물 등의 관세가 철폐된다면 일본의 대한국 수출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아무튼, 한일 양국정부는 한일 FTA를 체결한 후 최종적으로는 이를 계기로 중국이나 동남아국가연합(ASEAN)을 포함하는 동아시아경제권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한일간 FTA 논의가 성숙하면 다음 단계로 중국과의 FTA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동시에, 한중일 3국간 농산물 무역을 둘러싼 경쟁관계는 더욱 격렬해질 것이다.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EU 2001년도 농업소득 전망치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은 2001년도 EU 15개국의 1인당 실질농업소득이 3.3% 증가한 것으로 전망치를 수정하였다. 벨기에, 독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드 등 유로지역(Euro-zone)의 1인당 농업소득은 전년대비 3.0% 증가하였다.

EU 15개국의 1인당 실질농업소득이 증가한 원인은 실질농업소득 1.2% 증가와 농업노동투입액 2.0% 감소에 기인하고 있다.

2001년도 실질농업소득 변화에 관한 잠정치는 회원국간에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0.6% 감소한 룩셈부르크 이외의 모든 회원국들의 농업소득이 2000년 수준보다 높았으며, 덴마크 12.3%, 포르투갈 11.8%, 오스트리아 10.9%, 독일 9.9%, 아일랜드 7.8%, 벨기에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향후 EU에 가입할 8개국의 1인당 실질농업소득은 슬로베니아가 14.4%, 폴란드가 10.3%, 말타가 1.6% 감소한 반면 헝가리는 26.8% 증가하는 등 다양한 양상을 나타냈다. 농업소득은 체코가 20.5%, 에스토니아가 17.2%, 슬로바키아가 14.1%, 리투아니아가 13.6% 증가하였다.

표 1 EU 2001년도 일인당 농업소득 변화

국가	전년대비 변화율(%)	2001년 지수	국가	전년대비 변화율(%)	2001년 지수
EU-15	3.3	107.6	스웨덴	5.0	122.5
유로지역	3.0	112.1	핀란드	4.7	120.7
덴마크	12.3	107.1	영국	3.5	60.5
포르투갈	11.8	119.1	스페인	2.6	118.2
오스트리아	10.9	97.1	네덜란드	2.4	83.8
독일	9.9	123.9	그리스	1.5	99.4
아일랜드	7.8	101.8	프랑스	0.7	108.6
벨기에	5.3	101.4	이탈리아	0.2	115.0
			룩셈부르크	-0.6	98.6

자료: Eurostat

주: 1995=100(1995년도 기준치는 1994~96년도 평균치임)

1. 실질농업소득의 증가 원인

EU 15개국의 2001년도 1인당 실질농업소득이 증가한 원인은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첫째, 실질농업 총생산액 0.3% 증가

둘째, 투입비용 및 감가상각액 0.2% 증가

셋째, 불특정품목(non product-specific) 대상 실질보조금 9.7% 증가 및 불특정품목 대상 실질과세액 0.8% 감소

넷째, 노동투입액 1.6% 감소

2. 농산물 생산

2001년도 실질농업생산액 0.3% 증가에 대한 축산부문과 농업부문의 기

여도는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가축과 축산물의 실질생산액은 각각 2.1%, 3.7% 증가한 반면, 농산물의 실질생산액은 1.5% 감소하였다. 특정품목대상 보조금 총액은 2000년보다 0.4% 감소하였다.

생산자가격 기준 농산물 생산액은 2000년 수준보다 평균 3.0% 감소하였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실질 생산자가격 1.4% 상승에 의해서 보전되었다. 또한 농산물의 특정품목대상 보조금은 2000년 수준보다 0.6% 감소하였다.

품목별로 살펴볼 경우, 농산물의 전반적인 생산 현황은 곡물, 포도주, 토마토, 과일 등의 작황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 실질 생산자가격의 경우 토마토는 상승하고, 곡물류는 안정세를 유지했으며, 포도주는 감소한 반면, 2001년도 농산물 생산량은 감소하였다. 또한 곡물류와 포도주의 생산액이 각각 4.2%, 9.2% 감소한 반면, 토마토와 과일의 생산액은 각각 22.2%, 4.8% 증가하였다.

EU 전체의 생산현황은 주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이 주도하고 있으며, EU 15개국 중에서 이들 국가가 차지하는 농산물 생산액 비중이 2000년에 무려 75%에 달하고 있다. 전년에 비해 이들 국가의 실질 농산물 생산액은 모두 감소하였으며, 독일이 0.9% 감소, 스페인이 4.5% 감소하였다. 또한 2001년도 농산물 생산액은 7개 회원국에서 감소하였으며, 특히 룩셈부르크가 9.8%, 핀란드가 6.2% 감소하였다. 일부 회원국의 경우 2001년도 실질 농산물 생산액은 다소 증가하였으며, 벨기에 4.8%, 포르투갈 4.0%, 네덜란드 0.3% 증가하였다.

3. 축산물 생산

광우병(BSE)과 구제역(foot-and-mouth disease, FMD) 파동에도 불구하고, 돼지, 면양 및 산양, 가금류, 우유 등 축산부문의 2001년도 가격은 다소 상

승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축산물의 총생산액은 2.7% 증가하였다.

축산부문의 변화양상은 소, 돼지, 우유 생산 부문에 의해서 주도되는 한편, 소의 생산액은 질병발생의 여파로 10.5% 감소하였으며, 이를 실질 생산자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 13.3% 감소하게 된다. 특정품목대상 보조금이 10.0% 증가한데 반해 생산량은 1.9% 감소하였다. 또한 돼지와 우유의 생산액은 각각 16.2%,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돼지고기는 쇠고기의 대체 육류로써 소비자의 수요증대와 돼지의 실질가격 상승에 힘입어 생산액은 16.2%, 생산량은 0.2% 증가하였다.

주요 6대 축산물 생산국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등이며, 이들 국가가 EU 15개국 중에서 차지하는 축산물 생산비중이 2000년에 무려 80%에 달하였다. 한편 이들 국가 중 축산물 생산액은 스페인이 9.8%, 독일이 5.3%, 이탈리아가 3.4%, 프랑스가 1.8% 증가한 반면에 영국이 1.3%, 네덜란드가 3.9% 감소하였다.

자료: Eurostat
(김상현 ksh3615@krei.re.kr 02-3299-4369 농정연구센터)

EU 식물유전자 자원 국제협약 가입결정

EU 보건 및 소비자총국 집행위원인 데이빗 번(David Byrne)씨는 EU가 최근 ‘식품 및 농업분야의 식물유전자 자원에 관한 국제 협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식품의 다양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EU의 노력을 지속하는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협약은 식품 안정성 강화를 위해 세계의 중요한 농업용 식물 종을 보호하고, 국가나 민간 부분에서 식물 유전자 자원을 연구나 재배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EU의 결정에 대해 EU는 식품의 다양성과 품질을 유지하고 향상토록 노력해야 하며, 이번 결정은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데이빗 번 집행위원은 바라시카(Barassica)라는 EU의 대표적인 요리법을 예로 들면서 “양배추, 평지씨, 개구리자리류, 겨자, 당근, 순무 등 EU의 대표적인 농산물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이 요리가 만약 이들 다양한 원재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이 바라시카를 만들거나 구매하는데 불편을 겪게 될 것이며, 식품안전성과 관련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식품 및 농산물 유전자 자원의 명확한 정의와 분류를 세계적 표준에 따라 지정하는 것은 세계의 식품과 농업 생산물의 유전자 자원을 보

호하고 개발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EU의 가입은 EU 이외의 다른 국가들의 가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협약이 몇 가지 부분에서 개선돼야 할 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가입국들이 협약에 의해 공개된 유전자 자원의 이용을 통해 얻게 될 경제적 또는 기타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이들 이익을 어떠한 방식으로 공유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합의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익 공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협약의 준수를 좌우하는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EU는 앞으로 이익 공유와 관련해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협상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협약 내용 가운데는 많은 국가들의 작물 명단이 포함되어 있으나, 상당수의 EU 식물과 농산물의 주요 유전자 자원이 목록에서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협약의 내용이 ‘생물종 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과 상호보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 및 농업분야의 식물유전자 자원에 관한 국제 협약’은 지난 3월 유엔 식량국과 FAO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EU의 이번 가입은 세계 각국이 이 협약에 가입하는 추세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협약은 세계적으로 식품 및 농업 유전자 자원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CBD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식품 및 농업 유전자 자원에 대해서도 관련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된 데 따른 것이다.

자료 : EU RAPID에서
(박성준 funfair@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EU, 스페인의 유기농 표시제에 이의제기

EU 집행위원회는 스페인 정부에 대해 유기농산물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스페인 국내 상업 관행들을 시정 조치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러한 요청은 스페인 내에서 최근 몇몇 농산물들이 유기농법에 따라 생산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bio'라는 어구가 포함된 상표를 달고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EU 집행위원회가 확인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현행 스페인 법규는 유기농법으로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 'bio'라는 상표를 붙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스페인에서 유기농산물이 아니면서도 'bio'라는 어구를 포함한 농산물 상표로는 'Bio Danone', 'Bio Calcio-Nestle', 'Biosan' 등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U는 유기농업 및 유기농산물 표시와 관련된 규정을 상세히 정해두고 있는데, 회원국들은 모두 이 규정에 준하여 자국의 유기농업 관련 법규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 스페인의 국내법규나 이번 'Bio' 상표 관련 사례들은 EU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EU 집행위원회의 입장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공동체 조약(the EC Treaty) 제 226조에 따라 '의견서'의 형태로 스페인 정부에 이러한 사태의 시정을 요구했다. 만일, 이번 의견서에 대해 2개월 이내에 스페인 정부로부터 만족스러운 응답이 없다면,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에 스페인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된다.

자료: Organic Trades Service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프랑스, 국별 식품소비태도 조사결과 발표

프랑스 사회과학연구센터(CNRS)의 사회학자인 클로드 피슐러(Claude Fischler) 박사는 지난 6월 6일 프랑스와 미국, 이태리, 스위스, 독일, 영국 소비자들의 식품소비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 중간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식품소비태도에 있어 이태리와 미국은 양 대칭점에 있으며, 미국인들은 식품선택에 있어 가장 고심하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 이태리인들은 몇가지 사항만으로도 식품을 선택하는 낙천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

피슐러 박사는 “미국인들은 식품에 대해 영양학적인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미국인들에게 식품을 소비하는 일은 개인적인 책임에 속한 문제”라고 말하고, “미국인들은 식품선택에 있어 공공기관으로부터 보다 충분한 정보를 전달받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모든 조사대상 국가들에 있어서 가장 건전한 식품으로 간주되는 식품군은 과일과 채소, 생선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프랑스에서는 유제품이 생선을 대신해 과일과 채소와 함께 트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랑스에서는 또 육류가 다른 나라에서보다 건전식품 서열 가운데 앞서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랑스인들과 스위스인들은 다른 나라 소비자들보다 요구르트나 치즈 등 유제품을 보다 건전한 식품으로 여기는 반면, 미국인들과 영국인들은 이들 식품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먹는다’는 개념에 있어서도 국가마다 큰 차이를 나타냈다. 미국에서는 잘 먹는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영양학적으로 잘 계산된 식품을 섭취하거나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미국과 비슷한 식품소비 모델을 가지고 있는 영국에서는 편리함과 안락함의 의미가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인들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데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프랑스와 스위스, 이태리, 독일에서는 잘 먹는다는 것이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눈다는 것에 보다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에 응답한 각국의 식품소비자들은 현재의 식품소비 만족도를 조사한 항목에서 식품선택(87%), 식품의 다양성(80%), 식품에 관한 지식(78%), 식품위생(76%), 건강 및 신선함(50%) 부문에 만족도를 나타냈다. 반면, 전통(68%), 신뢰(57%), 품질(38%) 등에 있어서는 과거에 비해 현재의 식품소비가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응답자들 가운데 46%는 식품의 맛에 예전보다 못하다고 응답했으나 75%는 식품소비를 통한 기쁨이 예전보다 한층 증대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소비자들에게 가정법을 써서 그들이 원하는 식품소비의 시대와 장소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와 장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호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뉘앙스가 다르게 나타났다. 미국인들은 현재의 장소를 미국 전역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스위스와 프랑스에서는 그들이 살고 있는 지방 또는 도 등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영국인들과 이태리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현재의 장소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번 연구의 최종 결과는 오는 9월 25일 열리는 제26회 국제우유산업 세계총회(Congrilaite 2002)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자료: Agroinfo Europe에서
(오현석 ohsnu@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프랑스 농민단체, 농정총괄부서 신설 제안

프랑스 최대 농민단체인 전국농업경영자연맹(FNSEA) 등 농민단체들과 농촌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직업군을 대표하는 전국단체들이 망라된 프랑스 '농촌그룹'(Group monde rural)은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촌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는 부처간 정부기능을 대표하는 정책단위(Delegation interministerielle a la ruralite)의 신설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단체의 회장과 FNSEA의 회장은 지난 5월 28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농촌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례적인 연차회의가 필요하며, 각종 문제들의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에 접근할 수 있는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와 같은 새로운 정책추진단위의 창설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현재 프랑스 농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의료서비스의 취약”이라고 지적하고, “최소한의 경제활동들이 농촌지역에서 항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이뤄진 농촌관련정책의 농림부 이관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후, 보다 많은 농촌관련정책들이 상호연계성을 가지고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농림부와 국토정비청(DATAR)간의 정책추진협약이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촌그룹 (Group monde rural)에는 전국농업경영자연맹(FNSEA), 전국영농후계자연맹(CNJA), 자영업협회전국연맹(UNAPL), 전국수공업자연맹(UPA),

중소기업연맹(CGPME), 전국토지 및 농촌정비연맹(FNSAFER), 전국농업경영구조개선연맹(CNASEA), 프랑스 시장협의회(AMF), 프랑스 도협의회(ADF) 등이 소속돼있다.

자료: Agroinfo Europe에서
(오현석 ohsnu@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영국 농촌경영체지원사업으로 농촌활성화

영국의 ‘농촌경영체지원사업(Rural Enterprise Scheme, RES)’은 영국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농촌개발정책 프로그램들 중 하나이다. 영국 정부는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종류의 비즈니스들에 대해 RES를 통해 재정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농촌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 다양화,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WTO 체제 출범 이후, 특히 작년 11월의 도하 라운드 이후 농촌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미 지난 90년대부터 농정의 무게중심이 농촌정책으로 서서히 이동하기 시작했으며, 농업생산부문 이외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도 그것이 농촌사회의 유지와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농정의 틀 안에서도 지원하고 장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왔다. 농촌지역사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현재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영국의 정책 프로그램 패키지인 RES 내용을 소개한다.

1. RES란 무엇인가?

RES는 영국의 ‘농촌개발프로그램(English Rural Development Programme, ERDP)’의 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사업이다. 영국 정부는 RES를 통해 농촌 지역사회를 보다 지속가능하고 다양하게 가꾸기 위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RES가 지원하는 사업 분야는 매우 광범위하지만, 우선적인 목적은 농민들이 시장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한편, 농민들의 수익사업 외에도 농촌 지역사회의 경제, 문화, 환경 등의 측면에서 개발을 도모하는 사업분야에도 지원하고 있다.

RES는 구체적인 상업적 이익을 거두기 위해 계획된 사업에서부터 농촌 지역사회에 사회적, 환경적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RES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들은 모두 EU가 규정하고 있는 조건들을 준수해야한다.

표 1 Rural Enterprise Scheme이 지원하는 사업들(계속)

농장경영 및 농업경영체에 대한 서비스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체 창업 ○ 농업경영체 노동력 확보 ○ 농업 기계화 ○ 우유수집 ○ 농장경영 컨설팅 ○ 농장회계 서비스
고품질농산물 마케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품질 향상 계획 ○ 고품질 농산물 마케팅을 위한 협동조합 등 농민 조직화 사업 ○ 유기농산물 마케팅 ○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품질보증 ○ 토속요리 개발 ○ 파머스마켓 설립 ○ 농촌지역 특산물 브랜드화 사업
농촌지역 주민들에 대한 기초 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내 미니버스 운영 사업 ○ 아동보육 사업 ○ 정보센터 설립 ○ 기타 농촌지역의 기초 인프라 확충 사업
농촌마을 리노베이션 및 역사문화유적 보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 수공예 산업 육성 ○ 마을 박물관 건립 ○ 역사유적지나 문화경관에의 접근성 증대를 위한 도로 정비 ○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고건축물 리노베이션

표 1 Rural Enterprise Scheme이 지원하는 사업들

농업경영 다각화 및 농외소득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제품 농산물 생산 및 마케팅 ○ 농외소득을 위해 농업용 건축물을 리노베이션하는 계획(예 : 농촌관광 시설)
농업용 수자원 관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수시설 건설 ○ 수자원 관리용 장비 확충
관광 및 수공업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관광 사업 ○ 농촌관광 상품 마케팅 ○ 농촌 숙박시설 개선 ○ 농업관광 시설 투자 ○ 농촌 수공업품 마케팅
농업개발을 위한 인프라 개선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로 건설 또는 정비 ○ 지역 에너지 관련 인프라 구축
농림업 관련 환경보호 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림사업 ○ 동물보건 개선 사업

자료: 영국, DEFRA “Rural Enterprise Scheme”

영국 농림부는 이상과 같은 농촌지역의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지원하면서 지나치게 규제적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RES의 지원을 받는 사업들은 농촌지역 내 다양한 단체들의 협동적인 계획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2. RES 재정지원은 어떤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가?

RES는 농민을 지원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있지만, 농촌지역 내 단체나 기업 등 반드시 농민이 아니더라도 사업내용이 농촌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RES 재정지원의 최종 수혜자는 반드시 민간부문의 조직이어야 한다. 영국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RES 지원사업의 예산규모는 총 1억 5200만 파운드(1파운드는 대략 1800원에 해당됨)로서 2001년에서 2006년까지 6년간에 걸쳐 집행될 계획이다. 이 자금은 EU와 영국 정부가 분담하고 있다.

사업 당 지원금액은 그 비율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다. 대신에 해당 사업을 통해 신청자가 어느 정도의 상업적 이윤을 취하게 될 것인가에 따라 대략적인 범위를 정해두고 지원금액을 차등화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그러한 규정의 한도 내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금액을 신청하게 되는 것이다. 지원대상 사업의 규모에 대해서는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정해두고 있지는 않지만, RES 지원 금액은 경영체 당 최대 50만 파운드까지 상한을 정해두고 있다.

지원대상자에게 돌아오는 경제적 수익이 적은 사업(가령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이 농촌지역사회나 환경에 돌려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의 50-100% 수준에서 자금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자 본인이 얻게 될 경제적 수익을 사업의 우선적 목표로 두는 경우에는 총 사업비용의 30-50%가 지원된다. 그리고 지원대상자가 얻게 될 경제적 수익이 상당히 클 경우(가령 연 수익이 총 투자금액의 25%를 초과할 때)에는 총 사업비용의 15-30% 수준에서 자금지원이 이루어진다.

RES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는 영국의 ‘농촌개발프로그램(ERDP)’이 정하고 있는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영국 농림부 지방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사업인가’, ‘예상되는 편익은 어느 정도인가’,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소요자금 중 공적자금과 민간자본은 각각 어느 정도인가’ 등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출된 서류에 대한 1차 심사가 끝나면, 농림부 지역사무소와 ‘농업농촌 보존청(Farming and Rural Conservation Agency)’의 담당자들이 각각의 사업 계획에 대한 상세한 평가작업을 하고 평가보고서를 남긴다. 이 과정에서 평가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하여 사업에 대해 더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계획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예상되는 성과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관점에서 본 사업의 지속가능성’, ‘영국 정부의 상위 농촌정책에 대한 기여도’, ‘재정적 타당성과 리스크’, ‘공공부문 지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 ‘사업 추진 및 관리 계획’, ‘리스크 평가’, ‘지역 특성과의 부합 정도’, ‘수익성’ 등의 여러 기준에 따라 평가된다.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영국 농림부와 농업농촌보존청, 그리고 내각의 유관 부처 상급 관료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최종 승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자료: DEFRA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영국 축산쓰레기 이용하여 전기생산

축산 및 음식물 찌꺼기를 부패시켜 발생한 메탄가스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공장이 영국 남서부의 홀스워드(Holsworthy)에서 지난 17일 처음으로 가동에 들어갔다. 이 공장은 바이오 가스(Biogas)를 에너지로 이용하기 위한 녹색에너지 생산계획의 일환으로 건립됐으며, 영국 파마틱사(Farmatic UK Jurgen Fink)가 그 주인공이다.

바이오 가스 생산을 위해 이 공장은 주변에 있는 30여 농가로부터 160만 톤에 이르는 축산 및 음식쓰레기를 수집하고 있다. 이 공장의 한 관계자는 “영국에는 이러한 형태의 환경친화형 전기생산시설에 관심을 갖고 있는 농민단체나 식품기업들이 많다”고 밝히고, “바이오 가스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잠재력이 매우 크며, 현재 공장을 방문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주변지역의 농가들로부터 농업 및 가축생산 쓰레기를 수집하고 있으며, 몇 주 후면 바이오가스가 생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공장의 찰스 클라크 공장장은 “공장에서 초과 생산되는 열수는 지역의 공공기관 건물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계획이며, 개인주택들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시설을 갖춘 공장을 설립하는데 약 1200만 유로가 소요되었으며, 투자비의 절반가량은 유럽연합에서 지원되었다. 나머지 절반은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파마틱사가 부담했다. 환경보호 요구가 높은 독일에서는 이보다 큰 규모의 시설이 약 20 여개가 가동 중이며, 덴마크에서도 비슷한 수의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자료: Agroinfo Europe에서
(오현석 ohsnu@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스위스 가축이동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1998년 스위스에서는 농업정책 전반에 걸친 재평가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스위스 국내 축산농가들에게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축과 식육의 안전성에 대한 더욱 큰 책임이 강조되었다. 이를 위해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는 축산식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생산방법이나 원료의 기원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가축이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스위스 연방 수의사무국(Federal Veterinary Office)은 소, 양, 염소, 돼지 등의 가축 각각에 꼬리표를 부착시키고 그것을 언제든지 확인 가능할 수 있는 ‘가축이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출생농장, 거래자 기록, 기타 관련 기록들을 가축이동 모니터링 체계 안에 저장시켜 출생에서 도축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개별 가축들을 추적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현재 스위스 연방 수의사무국은 민간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3년째인 2001년까지 ‘가축이동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작업이 계속되었다. 이 프로젝트가 지니는 가치에 대해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설득시키고 모든 측면에서의 데이터 입력작업을 단순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작업을 진행해왔다.

현재까지 알프스 지역 목장에서 사육되는 가축들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완료된 상태이다. 광범위한 데이터들을 수집하여 실

제 농장에서의 가축 재고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면서 수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수정작업은 2002년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소 사육 농가들로 구성된 여러 단체들이 예전에 쓰던 ‘가축출생 통보시스템’을 폐기하였으며, 지금은 ‘가축이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축산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행정적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들 모두 축산농가들에게 이 새로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 수의사무국은 현재 가축 사육농가들이 ‘가축이동 모니터링 시스템’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정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해마다 무작위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자는 스위스 연방 수의사무국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자를 임명하고 있다.

이 ‘가축이동 모니터링 시스템’은 장차 더 큰 목적으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예를 들면 특수한 조건하에서 사육되는 가축들(생물학적 실험 등의 용도)에 대한 등록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농업 통계를 구축하는데에도 도움을 제공할 것이며, 가축위생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Swiss, Federal Veterinary Office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덴마크, 가축전염병 박멸에 도전

올해 들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돼지콜레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파동을 계기로 동식물에 대한 방역 및 검역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근 유럽국가들이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서도 1983년 이후 단 한번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양돈강국 덴마크의 수의식품청(the Danish Veterinary and Food Administration)을 소개한다.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중앙집권적인 형태의 정부기관으로서 1997년 덴마크 국립식품청(the National Food Agency)과 덴마크 수의서비스(the Danish Veterinary Service)등 두 기관이 통폐합돼 설립된 기구이다.

1. 설립 배경과 개관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덴마크 내각의 식품농어업부(the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의 산하기관이다. 수의식품청은 1997년 7월 1일 국립식품청과 덴마크 수의서비스라는 두 정부기관이 통폐합돼 설립된 기구이다. 당시 통폐합의 목적은 농장에서 식탁에까지 이르는 식품공급사슬 전체에 대해 모든 검역과 식품안전성 관리를 책임질 단일기구를 설치함으로써 당시 이원화되어 있던 관련 업무들을 조정하고 단순화시켜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탄생한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소비자들이 모든 종류의 식품을 안

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축들은 동물후생 관련법규에 맞게 위생적으로 사육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서비스를 실시하며, 검역활동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

덴마크 수의식품청의 설립 및 활동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덴마크 식품법이다. 현재 덴마크 내에서의 모든 검역활동들은 수의식품청 산하 11개의 ‘지역수의식품통제국(Regional Veterinary and Food Control Authorities)’이 수행하고 있다. 지역수의식품통제국은 수의분야와 식품분야 전반에 걸쳐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법규에 대한 민원과 안내를 도맡아 수행하는 지식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덴마크 수의식품청 본청 직원은 정규직 인원만 대략 540명 정도이며, 11개의 지역수의식품통제국에는 약 1,370명 정도의 정규직원들이 고용되어 있다.

2. 설립 목적과 활동 목표

덴마크 수의식품청의 설립목적은 다음의 두 가지로 명문화되어 있다.

- (1) 건강상의 위협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농축산물 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신뢰를 확보하며, 건전한 식생활습관을 장려한다.
- (2) 가축후생과 위생을 수호하며, 높은 수준의 덴마크 수의기준들을 유지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수의식품청이 설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활동목표들은 다음과 같다.

- (1) 식품 오염 차단 및 위생적 처리에 관한 활동
- (2) 소비자들에 대한 식품 및 영양에 관한 정보 제공 활동
- (3) 생산 및 공급사슬 전 과정에 걸쳐 모든 식품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효과적인 검역 활동
- (4) 고품질 식품 개발 촉진

- (5) 지속가능한 식품 생산활동 촉진
- (6) 덴마크 식품 수출활동 촉진
- (7) 연구 및 검사 분야 전반에 걸친 모든 활동들에 대해 건전한 과학적 기반 창출
- (8) 위협스러운 가축 질병의 유입을 차단하는 활동
- (9) 가축질병과 관련한 긴급상황 대응체계 유지
- (10) 수의식품청의 모든 활동들과 관련하여 개방성과 투명성 유지
- (11) 생산자로부터 소매상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통단계에서의 균일한 식품관련 기준 유지

3. 조직 구조

수의식품청은 본청 안에 3개의 부서를 두고 있으며, 본청 밖에 전국에 걸쳐 11개의 지역수의식품통제국을 두고 있다. 두개의 특별한 연구기관이 또한 수의식품청과 관계를 맺고 있다. 하나는 국립수의실험실(the National Veterinary Laboratory)이며 다른 하나는 국립바이러스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for Virus Research)이다. 이 두 연구소는 가축질병과 관련하여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국립수의실험실은 가축질병과 1차 축산활동에서 비롯된 식품관련 인간질병에 대해 방역활동을 한다. 국립바이러스연구소는 덴마크 국외로부터 오는 포유동물의 바이러스성 질환 모두에 대해 방역활동을 한다.

자료: the Danish Veterinary and Food Administration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베네룩스 3국의 유기농식품 시장동향

미국 농업부(USDA)는 최근 유기농 식품 시장규모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3개국의 시장 상황을 조사한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유럽 유기농 식품 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내 유기농가와 유통업체들에게 시장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룩셈부르크는 유럽에서 1인당 유기농 식품 소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벨기에는 연간 유기농 식품 시장 성장율이 25-30%에 이르는 유럽 4개국(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영국) 중 하나이다. 벨기에는 또한 국내에서 소비되는 유기농 식품의 약 5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의존 정도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1. 유기농 식품 소매시장

1.1. 네덜란드

1999년 현재 네덜란드에서의 유기농 식품 총매출액은 2억 3400만 Euro에 달한다(전체 식품 매출액은 230억 달러). 이는 1998년 대비 117%가 증가한 수치이다. 유기농 식품의 소매는 슈퍼마켓, 전문 식품상점, 파머스 마켓 등 다양한 형태의 매장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네덜란드 전체 유기농 식품의 약 50% 정도가 유기농 또는 건강식품 전문매장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다.

1998년 현재 약 700여 개에 이르는 전문매장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유기농 식품 매출액은 1억 1680만 Euro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매장을 통한 유기농 식품 매출액은 최근 4년 동안 8%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유기농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빠르게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유기농 식품 전문매장들은 대부분 독립적인 매장이다. 반면, Gimsel과 Natuurwinkel이라는 프랜차이즈 기업이 운영하는 전문매장수는 70여개소를 넘고 있다. 네덜란드 소비자들은 전문 소매점에서 유기농 식품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는 유기농 식품 전문매장의 상품 범위를 능가할만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대형 슈퍼마켓들도 유기농 상품들을 광범위하게 취급하기 시작했다. 슈퍼마켓에서는 각각의 상품 범주마다 하나 또는 두 가지의 상품들이 공급되고 있다. 슈퍼마켓 체인들은 1996년에서 1998년 사이 2년 동안 네덜란드 유기농 식품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유기농 식품시장에서 슈퍼마켓이 차지하는 비중은 2년 동안 19%에서 27%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두가지 측면에서 관찰되는데, 하나는 유기농 상품을 판매하는 슈퍼마켓의 수이며 다른 하나는 상품의 범위이다.

네덜란드 최고의 슈퍼마켓 체인인 Albert Heijin은 1998년에 자체 유기농 상품 브랜드인 'AH Biologisch' 를 도입했다. 이 브랜드로 판매되는 유기농 상품의 범위는 현재 100가지 이상으로 채소, 빵, 차, 커피 등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수요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식품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2003년 경에는 200여 가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농 식품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다른 슈퍼마켓 체인들로는 108개의 품목을 취급하고 있는 Konmar와 98개 품목을 취급하고 있는 Nieuwe Weme가 있다. 2000년도에는 세계적인 환경운동단체인 그린피스와 네덜란드의 유력한 환경운동단체인 Milieudefensie가 '네덜란드에서 유기농 식품을 가장 잘 공급하는 슈퍼마켓' 으로 Konmar를 선정한 바 있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의 슈퍼마켓은 몇몇 주요 슈퍼마켓들이 750개에서 1000여 개에 이르는 유기농 식품을 취급하고 있는 독일이나 덴마크의 상황에 비하면 여전히 소규모라 할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현재 1200개의 슈퍼마켓에서 유기농 식품이 판매되고 있는데 1995년에는 유기농 식품을 취급하는 슈퍼마켓의 수가 70개에 불과했다.

소비자들이 유기농 식품을 구매하는 또 다른 인기있는 두 가지 경로로 ‘채소 직배시스템’과 ‘파머스마켓(farmers market)’을 들 수 있다. 채소 직배시스템은 매우 인기가 있는데, 1999년 현재 4만 5000가구가 채소 직배시스템을 통해 매주 1회 이상 유기농 채소나 과일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채소 직배시스템의 회원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슈퍼마켓에서의 유기농 식품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채소 직배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들은 박스에 담긴 신선채소나 과일을 공급받고 있으며, 대부분 유기농 식품상점이나 농장으로부터 배송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또한 유기농 상품과 산지에 대한 정보가 담긴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받아 보고 있다. 이 소식지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결속을 다지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파머스마켓의 인기는 매우 높아 1996년도에는 그 수가 27개에 불과하던 것이 4년 뒤인 1999년에는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그리고 어떤 농민들은 유기농 식품 매장을 직접 운영하기도 하는데, 1998년에는 그 숫자가 모두 135개에 달했다.

1.2. 벨기에

1999년 현재 벨기에에서의 유기농 식품 총 매출액은 14만 8736 Euro에 달하며, 이는 한해 전인 1997년에 비해 78% 증가한 규모이다. 이처럼 유기농 식품시장이 급격히 팽창하고 있으나, 벨기에의 식품 소매시장에서 유기농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1% 수준에 불과하다.

벨기에의 유기농 상품 유통경로는 약 400여개에 달하는 자연/특산 식품 상점과 일주일 간격으로 열리는 장터(대부분의 주요도시에는 파머스 마켓이 있으며, 유기농 상품만을 판매하는 시장은 브뤼셀과 아이스트오프덴버그에 각각 1개소가 있다)와 농장으로부터의 직판이 있다. 슈퍼마켓은 유기농 상품시장에 이제 막 참여한 상태이며,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총 매출액 중 유기농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0.55%에 불과하다.

벨기에에는 유기농 상품을 취급하는 세계의 주요 슈퍼마켓 체인이 활동 중이며, Delhaize, GIB, SA Colruyt 등이 이에 해당한다. Delhaize는 아주 광범위한 “바이오 상품” 유통망을 갖추고 있는 슈퍼마켓 체인 분야의 선두주자이다. 한편 프랑스계 회사인 La Vie는 GIB에 200여 개의 유기농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Colruyt는 건식품이나 약간의 신선채소와 과일 등의 유기농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1.3.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농산물 유통은 여타의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농민들에 의한 직판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농민들에 의한 직판은 룩셈부르크 유기농 상품 유통에 있어 중요한 토대이다.

예를 들어 유기농 가공류 부문을 살펴 보더라도, 자체 상품만을 취급하는 대형농장들이 존재한다. 가공류 외에 많은 종류의 유기농 채소들은 파머스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다. 즉, 생산자들이 직판을 통해 대부분의 상품을 판매하고 일반 슈퍼마켓 경로를 통해 유기농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한편, 룩셈부르크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 체인인 Cactus는 유럽 어느 곳에서도 비할 바 없는 광범위한 유기농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룩셈부르크에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 대형 자연식품 매장인 BioG는 사실

상 농민협동조합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BioG는 Naturata Uberlingena와 협력하여 그 상표명으로 팔고 있다. BioG는 광범위한 신선식품과 가공식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국내산과 수입산을 함께 취급하고 있다.

2. 유기농산품 생산 및 가공

2.1.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세계 주요 농업생산국 가운데 하나로서 농지의 약 1% 정도가 유기농 생산에 이용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유기농 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육류 부문이며 광우병 사태 이후 유기농 육류시장의 비중이 점차 중요도를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유기농 생산분야에서 성장세가 가장 빠른 분야는 낙농생산 분야이다.

최근 네덜란드는 유기농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관련법규가 개정됨으로써 과수재배 농가들 사이에서 유기농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유기농 재배 과수농장 수는 매년 두 배 정도씩 증가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유기농업을 관장하는 기구는 SKAL로서 지금까지 1,350개의 농장과 750개의 가공회사에 대해 유기농 생산을 인증했다.

네덜란드 유기농 시장은 단기간 내에 폭발적인 신장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왜냐하면 유기농 상품에 대해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슈퍼마켓들의 유통장악력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네덜란드의 유기농 상품들은 국내의 공급부족 상황에도 불구하고 70% 이상이 수출되고 있다.

온실재배를 통한 유기농 생산은 여전히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약 40여개의 유기농 생산농장만이 온실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네덜란드 유기농 시장의 이러한 상황은 일반 농산물의 품질이 워낙 뛰어날 뿐만아니라 가격경쟁력 또한 우수하기 때문이다.

유기농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네덜란드 기업들은 ‘The Dutch Organic Market Garden’이나 ‘Gebr Verbeek v.o.f’들이 있으며, 이들 유기농 기업들은 온실에서 오이, 고추, 토마토 등의 작물을 혁신적인 방법으로 대규모로 생산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네덜란드 정부가 수여하는 ‘원예경영상(Horticulture Entrepreneur Award)’을 수상한 바 있다.

네덜란드가 신선 유기농산물과 유기농 가공식품 두 분야 모두에서 주요 수입국이라는 사실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이는 국내 유기농 생산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가 국제무역 중심지로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네덜란드에 수입되는 유기농산품의 80% 정도는 다른 국가도 다시 수출된다)에 따른 것이다. 네덜란드의 유기농 채수출 상품은 신선 청과류, 곡물, 견과류, 땅콩, 커피, 차, 허브 등이며, 이들 유기농 수입상품은 지중해 연안, 동유럽, 북아프리카, EU 회원국들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유기농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면서 유기농 식품 가공업체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66년 이후 네덜란드 유기농 시장에는 300여 개에 달하는 신규 가공업체들이 진출하여 유기농 식품 가공업체 수는 모두 733 개에 달하고 있다. 1999년 한해 동안에만 15개의 정육업체, 12개의 제빵 및 제과업체, 21개의 청과 가공식품 업체, 7개의 유가공업체들이 새로이 시장에 진출했다.

네덜란드의 유기농식품 가공산업은 전문화 추세에 있으며, 품목별로도 다양한 상품이 생산되고 있다. 이밖에도 많은 수의 주요 유가공업체들도 가까운 장래에 유기농 생산라인을 추가할 전망이다.

네덜란드의 유기농 가공업체 대부분은 국내산 또는 유럽산 원료들을 사용하고 있다. 지금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원료들을 직접 수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특히 주요 가공업체들이 직접 유기농 원료를 수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2. 벨기에

벨기에 유기농업의 주요 생산물은 곡물, 쇠고기, 채소 등이다. 그리고 소량의 유기농 닭고기, 돼지고기, 과일 등이 생산된다. 하지만 이러한 생산은 수요를 감당하기에 충분한 양이 못되며, 벨기에는 대부분의 유기농 상품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편, 벨기에는 토마토, 오이, 고추와 같이 온실에서 재배된 유기농 상품들과 초콜렛, 두유 등의 유기농 가공식품들을 유럽의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수출하고 있다.

벨기에는 유기농 식품 가공업체들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다. 각 품목별로 가공업체들이 전문화되어 있으며, 이들 업체들의 전문화 수준은 유기농 시장에 이제 막 진출하기 시작한 거대 주류 가공업체보다 더 높다. 가공업체들은 원료농산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다른 EU 회원국들로부터 수입하는 경우가 많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벨기에의 기업 Lima는 유럽에서 가장 큰 유기농 식품 가공업체였다. Lima는 현재 주로 유기농 통조림을 생산하고 있으며, 베네룩스 3국 전역에 산재하고 있는 자연식품 상점에 유기농 빵을 공급하기 위한 제빵점들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2.3.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의 유기농산물 원료 생산은 유제품과 축산 부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5개의 농장이 생산하는 유기농 채소의 생산량이 벨기에 전체 생산량의 절반에 이른다. 그러나 여전히 룩셈부르크의 유기농 채소 생산량은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약간의 유가공, 육류가공, 씨리얼 가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채소나 과일류의 통조림 가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문들에서의 기업 활동은 유럽에서 일인당 유기농 상품 소비율이 가장 높은 벨기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유럽의 여타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이 벨기에의 모든 유기농 상품분야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 식품 서비스와 상품 유형별 수요

3.1. 식품 서비스

네덜란드에서 유기농 식자재 공급은 정부기관과 고급 레스토랑이라는 두 가지 핵심 시장을 공략하면서 성장해왔다. 유기농 차, 유기농 커피 같은 상품들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 지방의회 직원, 은행원 등에게 규칙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식자재 공급 업체들은 기업체 식당이나 매점에 유기농 상품들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현재 유기농 식자재를 사용하는 급식소 주방장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회원 수는 70명이며 각기 고급 레스토랑과 공공기관 식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구성비는 거의 반반이다. 주요 유기농 식자재 공급회사 중 하나인 Marfo 사는 46종의 ‘자연 유기농 식사’를 스위스 국립항공사인 Swissair에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식품 서비스 부문에서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려는 움직임은 베네룩스 3국 모두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3만 여개의 레스토랑과



Biogarantie사의
인증마크

대중음식점이 존재하며 그 명성이 뛰어난 벨기에의 경우를 살펴보자. 벨기에에서는 상당수의 레스토랑들이 유기농 식자재로 요리한 음식을 판매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그들이 음식을 준비하면서 유기농 식자재를 사용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통제장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유기농 상표인 ‘Biogarantie’의 소유권자이며 유

기농 식자재에 대해 자체 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Biogarantie 사가 현재 참여를 희망하는 레스토랑들에 대해 유기농 음식 인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그러나 레스토랑들이 스스로 식자재를 어디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선전하고 있는 바를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믿게 될 날은 아직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3.2. 상품 유형별 수요

베네룩스 3국에서 현재까지는 유기농 신선상품에 대한 수요가 유기농 가공상품에 대한 수요보다 훨씬 크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에서 가장 널리 판매되는 유기농 상품은 감자이다. 1997년 한 해 동안 유기농 신선상품 소비는 전체적으로 30%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들 중 상당 부분이 네덜란드에서 자급되는 것이 아니라 EU 회원국들로부터 수입되는 것들이다. 견과류와 땅콩이 수입 유기농 상품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유럽연합 국가들 중에서 일인당 땅콩 소비가 가장 큰 나라이다. 수요가 있는 다른 유기농 상품으로는 유지류, 콩, 쌀, 와인, 아침식사용 씨리얼, 벌꿀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유기농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농 상품 무역업자들에게는 그만큼 기회가 크다.

어떤 종류의 유기농 상품이든 품질이야말로 소비자의 구매 기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유기농 식품의 원산지나 작물재배 방법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는 일부 열성적인 유기농 상품 전문 바이어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나머지 대부분의 식품 바이어들 또한 그들이 유기농 상품을 웃돈을 얹어주고 구매하는 까닭에 대해 우수한 맛과 신선도 외에 다른 측면에서도 확실한 보증을 받고 싶어한다. ‘A등급’ 관행 농산물에 대해서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우수한 품질들, 즉 모양의 균일성, 색상, 흠 없는 외관, 청결도, 동일한 품목들 안에서도 다양한 선택의 여지 등의 장점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유기농 상품을 구매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다.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베네룩스 국가들의 유기농 시장은 바로 그러한 원칙들을 고수

하고 있다. 엄격한 품질에 대한 요구는 특히 유제품과 신선채소에서 더욱 크다. 신선채소류는 새로운 유기농 식품 소비자들을 끌어들인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유기농 채소 직배 시스템에 가입한 소비자들 중 60% 이상이 유기농 식품 상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지 않는 소비자들이다.

4. 유기농식품의 유통경로와 가격

4.1. 유통경로

베네룩스 국가들에서 수입된 유기농 식품의 가장 일반적인 유통형태는 전문화된 수입업자 - 가공업자 - 포장업자의 손을 거쳐서 도매상에게 넘겨지거나 소매 매장에 직접 전달되는 방식의 유통경로이다. 한편, 식품 제조업자들은 수입업자나 전문화된 가공업자들로부터 식자재를 직접 공급받는다. 대개는 수입업자들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보다 전문화된 가공업자들로부터 공급받는 경우가 더 많다. 국내에서 생산된 유기농 상품의 유통경로 또한 기본적으로 위와 동일하다. 그러나 수입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유통단계 하나가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다.

베네룩스 3국 모두에서 대부분의 유기농 상품들은 소규모로 전문화된 매장을 통해서 판매되기 때문에, 도매상은 유통경로에 있어서 중간과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들에서 전문화된 유기농 상품 수입업자 또는 도매업자들의 수는 여전히 적은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벨기에에서는 당국에 등록되어 있는 도매업자들은 5만 명이나 되지만 이들 중 1/5만이 국내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유기농 상품을 취급하는 비중은 매우 적다.

수입업자들은 세계 전역으로부터 유기농 상품을 수입하려 하지만 베네

룩스 국가들의 식품 제조업자들은 대부분 네덜란드나 독일 등 유럽 국가들에서 식품 원자재를 공급받는 것을 더 선호하는데, 그것은 가격이 싸고 이들 운송거리가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무역업자들은 엄격한 품질 기준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첨가물을 넣는 기본적인 가공을 거친 유기농 원자재를 유럽 밖에서 수입하여 공급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유기농 상품 공급사슬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참여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이들이 자신의 필요나 시장의 요구에 대해 매우 엄격한 요구사항들을 견지한다는 점이다. 그러한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려면, 유럽 밖의 유기농 상품 공급자들은 무엇보다도 상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고, 지속적이고 일관된 품질의 상품을 공급할 수 있으며, 상품의 생산 및 유통경로가 완전히 추적가능하고 유기농 상품으로서의 품질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물류 문제이다. 네덜란드의 무역업자들은 상품이 적절하게 포장되어 있는지, 변질되지 않고 잘 보관되어 있는지 등의 문제에 대해 매우 까다롭다.

4.2. 가격

이들 세 나라에서 유기농 상품의 가격은 상품 유형에 따라, 가공 정도에 따라, 구매 물량에 따라, 수급상황에 따라(계절에 따라서 유기농 과일의 경우 관행농법으로 생산된 과일보다 200%나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한편, 유기농 우유나 육류는 가격차가 거의 없다.), 경쟁상황에 따라, 포장이나 판촉활동의 내용에 따라 그 폭이 매우 크다. 유기농 상품의 가격이나 마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관행 농산물보다는 유기농산물 가격이 더 높다는 점이다. 대개의 경우, 신선식품의 경우 15-20% 정도 더 높고, 가공식품의 경우 25-50% 정도 더 높다. 소매상들은 대체로 A등급의 관행 농산물보다 같은 품목의 유기농산물을 적어도 10% 정도 더 비싼 가격에 파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경쟁이 심화되어 유기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때에는 관행 농산물보다도 더 가격이 낮아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베네룩스 3국에서의 유기농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은 관행 농산물이 상당히 분업화된 유통 경로를 통해서 유통되는 것에 비하면 한마디로 매우 불투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슈퍼마켓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유기농 상품에 대해 지불하는 프리미엄 가격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유기농 상품의 가격과 마진은 상품 유형에 따라 상당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계속해서 유동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유기농 상품 수출업자는 정확한 가격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정보 또한 날마다 갱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정보들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들은 전 세계로부터 유기농 상품을 수입해오는 베네룩스 국가들의 수입업자들이다.

자료: USDA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EU 불법벌목방지 위해 인증시스템 도입검토

불법 벌목에 대한 강력한 대비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산림법 강화, 관리, 무역(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 ; FLEGT)’에 관한 국제 워크숍이 2002년 4월 2에서 24일까지 브리셀에서 개최되었다. EU 집행위원회에서 주관한 이번 워크숍에는 EU를 비롯한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캐나다 등 세계 주요 산림 수출입국들의 주요 정책 담당자들과 목재관련 업체, NGO 등이 참석하였다.

불법벌목과 산림훼손행위는 열대림의 파괴의 주범이며, 이는 막대한 비용지출을 유발하여 전세계적으로 해마다 150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이 불법벌목과 산림훼손 방지를 위하여 지출되고 있다. 이번 FLEGT에 관한 워크숍은 EU의 주관아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각국들의 심각한 문제인식과 적극적 대응책의 모색 차원에서 개최된 것이다.

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어떠한 정책이 목재생산국과 목재수입국의 불법 벌목 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인가, 둘째 투명한 목제품 무역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가.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참가자들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EU는 EU로 유입되는 목제품이 합법적 과정을 통해 제조되었음을 인증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EU는 불법 벌목된 목제품이 EU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EU는 EU로 반입되는 불법 목재품에 관한 수입통제권을 세관과 불법벌목 감시 단체들에게 부여하는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세관과 불법벌목규제 단체들 간의 협력 강화가 효과적인 불법목재 유입 방지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셋째, 불법벌목을 포함한 산림 범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해야하며, 산림 범죄에 쓰이는 불법 자금이 불법 목재의 수출입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법규를 새로이 정비해야 한다.

넷째, 목재관련 업체들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강력한 법규를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목재관련 업체들간의 불공정한 경쟁이나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같은 워크샵의 결과를 바탕으로 EU집행위원회는 FLEGT 이행 계획을 올해 말까지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 EU RAPID에서
(박성준 funfair@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지속가능한 임업을 위한 삼림인증제도

TV나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 자주 들어왔던 아마존 밀림의 무분별한 벌채와 같은 산림훼손은 우리 후손들이 살게 될 미래의 지구환경을 염려하는 수많은 지구촌 시민들의 걱정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한 우려는 ‘지속가능한 임업’, ‘책임을 다하는 삼림관리’와 같은 슬로건과 함께 삼림인증제도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삼림인증제도는 전 세계에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다. 많은 국제기구, NGO, 정부들이 각기 다양한 삼림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 효과를 지구적인 차원에서 한층 더 고양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여러 삼림인증제도들이 가급적 하나의 통일된 기준 아래에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삼림인증제도를 말할 때에는 세계삼림관리협회(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를 빼놓을 수 없다. FSC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우면서도 권위있는 삼림인증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기관이다.

삼림인증제도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커지고 있지만, 우리에게만은 낯설기만 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처럼 삼림자원이 풍부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기울여 실시하고 있는 FSC의 삼림인증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1. FSC에 대하여

FSC는 1993년에 전 세계 25개국의 환경운동단체들, 목재산업 기업들, 임업 종사자,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조직으로 멕시코의 Oaxaca에 본부를 두고 있다. FSC는 전 세계의 많은 삼림인증기관(정부, NGO 등)들을 다시 인증하고 있는데, FSC로부터 인증받은 기관들이 인증한 삼림면적은 전 세계에 걸쳐 수천만 에이커에 달한다. 그렇게 FSC가 인증한 삼림지역은 벨기에,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코스타리카, 체코, 온두라스,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네덜란드, 파라과이, 폴란드, 솔로몬 군도, 남아프리카, 스리랑카, 스웨덴, 영국, 미국, 짐바브웨 등의 국가들에 위치하고 있다.

2. FSC의 임산품 인증제도의 목적 : 책임있는 삼림관리

많은 환경보호단체들과 임산업 부문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서로 모순되는 필요를 갖고 충돌하기도 한다. 환경보호단체들은 벌채가 지니는 강렬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생태학적 위험에 대해 강조한다. 다른 한편, 임산업 부문 기업들은 식목사업, 기계화된 벌채, 유전공학 등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임산업 부문의 장미빛 미래를 그리기도 한다. 지난 10여년 사이에 이러한 두 세력들의 서로 상반되는 주장들은 ‘책임있는 삼림관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던지기에 충분했다.

3. 합의 형성

그런데 최근들어 그린피스나 세계야생생물기금(WWF, World Wildlife

Fund)와 같은 환경운동단체들은 이제 삼림 보호와 건전한 삼림관리를 위해서는 임산품 인증제도가 효과적이라는 점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임업 강국인 스웨덴에서 가장 큰 임산업 기업인 Assi Doman과 같은 회사들도 임산품 인증제도가 임산업 부문 산업에서 건전한 경영활동을 촉진시킨다는 점에도 동의하고 있다. 지금은 많은 환경운동단체들과 기업들이 함께 FSC의 회원이 되어 합의를 형성해 나가려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과 환경운동단체가 합의를 이루어 한 목소리로 같은 주장을 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이해들을 독특한 방식으로 결합시킴으로써, FSC는 삼림관리에 대한 지구적인 차원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4. 인증제도가 소비자에게 의미하는 바는?



<FSC의 삼림인증마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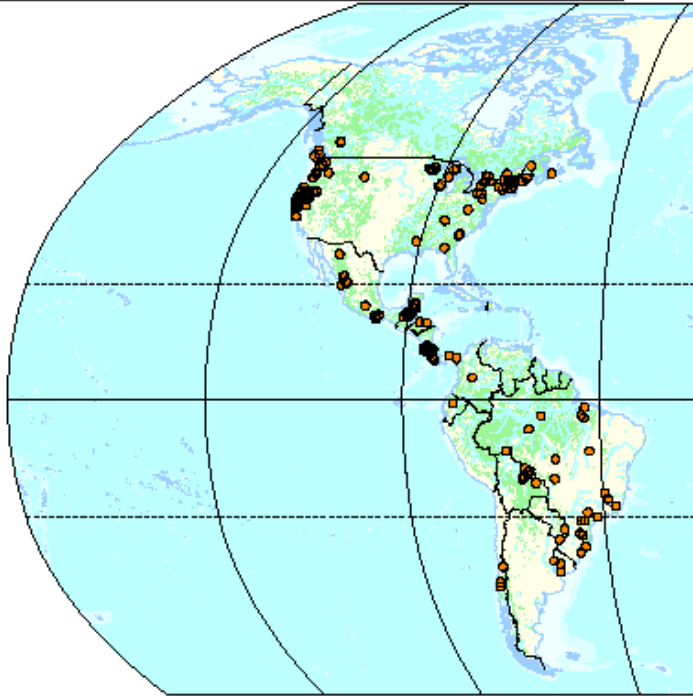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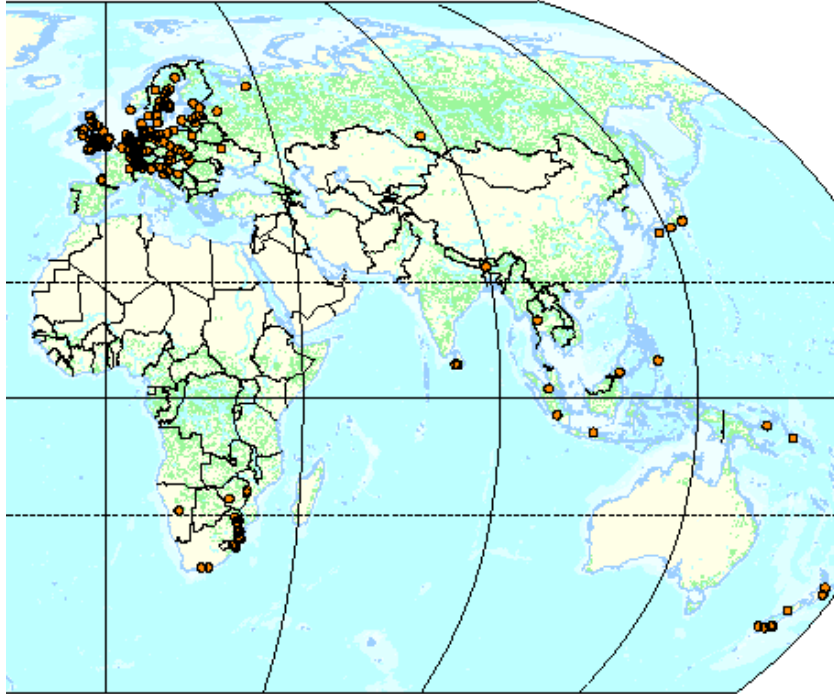
숲에서 나온 목재가 최종 임산품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삼림인증제도는 소비자가 ‘책임을 다하는 임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삼림 소유자에게는 삼림관리 활동을 개선시키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임산업 부문에서는 생산자, 공급자, 제조자, 유통업자, 소비자 사이의 관계가 그물처럼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다. 자신의 바로 앞과 뒤에 위치하여 직접 거래하는 공급처와 수요처를 빼고는 다루고 있는 상품들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도착하게 되는지 관련 기업들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복잡한 관계는 숲에서 최종 생산물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할 수 없게 만든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건전한 삼림관리활동에 대한 보상을 지불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어렵게 만든다. 인증제도는 시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들을 연계시키는 메커니즘이다.

5. FSC : 독립적인 지위에서 제공하는 신뢰와 보증

임산품에는 많은 표시가 붙는다. 거기에는 회사의 브랜드명, 상품의 원산지, 수종, 등급, 강도, 가격 등이 포함될 것이다. 최근에는 목재와 강철이나 플라스틱을 비교하거나 자원관리 수준을 설명함으로써 목재상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장을 표시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삼림관리 자원의 수준을 설명하는 많은 표시들이 있지만, 상당수는 피상적이거나 잘못된 것들이다. “우리는 벌채하는 것보다 두배의 나무를 다시 심습니다”와 같은 주장이나 단순히 ‘인증됨’이라는 문구가 찍혀있는 브랜드 명은 삼림자원 관리의 질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것들이다. 때로는 “우리는 지속가능한 임업활동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와 같은 식의 주장은 잘 의도된 것이기는 하지만, 제3자의 입증이 없다면 소비자가 그러한 주장의 신뢰성에 대해 의심을 품을 수 있다.

FSC는 제3자의 독립된 입장에서 그러한 보증을 하고 있다. FSC는 엄격하고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삼림관리 기준에 따라 임산업 부문 기업들의 활동들을 독립된 입장에서 평가하고 있다. FSC는 숲에서 최종 임산품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따라붙는 주장들을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소비자가 어떤 임산품에서 FSC 로고를 발견할 때에는, 그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임업을 위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들을 충족시키는 건전한 임업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6. FSC의 기준과 정책

FSC는 삼림인증과 관련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는데, 그것은 전세계의 모든 숲에 적용된다. FSC가 보증하는 숲은 생태학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며, 경제적으로 활력있는 방식으로 관리되는 숲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지역 또는 국가에 따라서는 FSC가 제공하는 일반 원칙들을 지역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더욱 의미있는 기준으로 만들기도 한다. FSC는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그렇게 수정된 삼림관리 기준이나 인증에 대해 검토하여 다시 인증한다.

자료: Forestry Stewardship Council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스웨덴 삼림인증제도 정착추진

스웨덴의 자연보호협회(SSNC, Society of Swedish Nature Conservation)와 세계야생생물기금(WWF, World Wildlife Funds)은 최근 세계삼림관리협회(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의 삼림인증기준에 따라 마련된 스웨덴 정부의 삼림관리 기준이 임업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공동평가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FSC는 1993년에 창립된 NGO로서 환경보존운동단체, 목재기업, 임업 전문가, 삼림지역 주민조직, 세계 25 개국의 임산물 인증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적인 단체이다. FSC는 지속가능한 임업을 위해 세계 각국의 삼림 또는 임산물 인증기관들을 평가하고 승인하는 활동을 비롯하여 국가별 또는 지역별 삼림관리 기준 개발 지원, 삼림 관련 공공교육 및 정보화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SSNC의 평가결과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적용되고 있는 FSC의 삼림인증제도는 대체로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몇가지 보완할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림자원이 풍부한 국가인 스웨덴의 지속가능한 임업을 위한 노력은 FSC 인증과 같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삼림을 관리하려는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SSNC의 이번 평가보고서는 삼림인증제도를 둘러싸고 최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세계적인 논의 및 활동 동향을 소개한다.

1. FSC, 지속가능한 임업을 위한 도구

SSNC와 WWF의 이번 공동평가 연구의 목적은 FSC 인증에 따른 스웨덴 정부의 삼림관리 기준을 스웨덴의 삼림인증기관과 FSC로부터 인증받은 삼림 소유자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려는데 있다. 스웨덴 당국으로부터 독립된 민간 연구팀들이 2001년 봄부터 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삼림인증기관의 대표자들, 임업계 대표자들과의 인터뷰와 스웨덴의 대표적인 환경운동단체들로부터의 설문응답 자료에 근거해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밖에도 FSC와 스웨덴의 모든 공공인증기관들의 관련규정이 함께 검토되었다.

2. FSC 인증기준의 적용수준

이번 연구의 주요 결론은 FSC 인증기준에 따른 스웨덴 당국의 자체 기준들 중 많은 수의 환경관련 고려사항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잘 적용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여지가 조금 있다는 것이다. FSC의 인증제도는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시장과 일반대중들의 신뢰를 받을때에만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FSC에 가입해 있는 모든 인증기관이나 삼림소유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FSC의 스웨덴 기준의 일부 내용과 관련해서는 인증기관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일상적인 임업활동 가운데 FSC 스웨덴 기준을 준수하려 애쓰는 삼림소유자들의 노력 또한 현재 상태 또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FSC 스웨덴 인증기준의 일부 내용은 개정되거나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이 완벽하게 개선될 때 삼림 소유자들의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FSC 인증에 대한 대중적 신뢰 또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3. FSC 인증기준의 환경관련 22개 항목

FSC 스웨덴 인증기준 중 환경적 측면과 관련된 22개의 기준들에 대해 이번 연구를 통해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주안점은 그 항목들이 임업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에 두어졌다. 인증기준 항목들을 준수하기 위한 방법이나 항목 자체의 개정 필요성 등에 관한 제안 또한 작성되었다. FSC 스웨덴 인증기준 가운데 9개 항목에 관해서는, 현재 스웨덴의 임업현장에 그대로 도입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9가지 항목들은 핵심 서식생물, 자연보호림, 트랜지션 존과 버퍼 존(transition zone and buffer zone), 토양 훼손, 자연 복원, 네모랄 존(nemoral zone)에서의 가문비나무 속 식물, 활엽수의 최소비중, 활엽수가 우점종인 삼림면적의 최소 비중 등에 관한 것들이다. FSC 스웨덴 기준들 중 그와 같은 몇가지 항목들은 공식화해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항목들이 FSC 인증을 받은 모든 삼림 소유자들에 대해서 잘 적용되고 있으며 원활하게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4. 13개 항목들은 준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명

앞의 9개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기준항목들과 관련해서는 임업 현장에서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 9개 항목들의 경우, 인증기관들이 삼림 소유자에게 준수할 것을 강하게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따라서 삼림 보유자들 또한 그러한 기준들을 부분적으로만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기관들은 습지에서의 삼림 복원, 높은 수준의 생물종 다양성 가치를 지닌 수목, 거목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수종, 고목, 사목, 경관생태 계획, 경관적 관점에서의 수령별 수목 분포의 균형, 표토 훼손에 민감한 수종들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삼림에서의 놀이 인구 통제, 핵심 서식생물 목록에서 제외된 생물종 등의 기준 항목들에 대해 삼림 보유자들에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데 게을렀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5. 인증기관들의 기대

인증기관들은 삼림 소유자들에게 기준 준수를 강력히 요구하지 않은 점들에 대해 몇가지 이유들을 밝히고 있다. ‘습지에서의 삼림 복원’ 항목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기준 조항들의 문서상 표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며, ‘높은 수준의 생물종 다양성 가치를 지닌 수목’항목과 관련해서는 FSC 스웨덴 인증기준에 따라 삼림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른 항목들의 경우 인증기관들이 FSC 스웨덴 기준을 해석함에 있어 강력한 요구사항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따라서 그 기준항목들을 임업현장에서 적용함에 있어 삼림 소유자들에게 강한 요청을 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6. 삼림 소유자의 반응

어떤 기준항목들에 대해 삼림 소유자들은 준수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견해를 보였다. 예를 들어 ‘습지에서의 삼림 복원’항목과 ‘삼림에서의 놀이 인구 통제’항목들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삼림 소유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항목들의 조정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자료: Society of Swedish Nature Conservation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네덜란드, 지구 숲 살리기 운동 개최

지난 4월 이후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의 고층 타워에는 세계삼림관리협회(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의 로고와 ‘숲을 살리자’는 내용의 대형 레이저 쇼가 펼쳐지고 있다. 이는 FSC가 인증하는 임산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네덜란드에서 국가적인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소비자 캠페인의 한 광경이다.

FSC는 1993년에 전세계 25개국의 환경운동단체들, 목재산업 기업들, 임업 종사자,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조직으로 멕시코의 Oaxaca에 본부를 두고 있다. TV나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 자주 들어왔던 아마존 밀림의 무분별한 벌채와 같은 산림훼손 사태가 우리 후손들이 살게 될 미래의 지구환경을 염려하는 수많은 지구촌 시민들의 걱정을 불러 일으키는 상황에서 FSC는 ‘지속가능한 임업’, ‘책임을 다하는 삼림관리’와 같은 슬로건과 함께 삼림인증제도를 추진해오고 있다.

FSC의 삼림인증은 숲에서 나온 목재가 최종 임산품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소비자가 ‘책임을 다하는 임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이다. 지속가능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숲과 그 숲에서 생산된 임산품에 대해 FSC는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FSC의 인증기준은 매우 까다로워서 인증받은 숲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FSC의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임산품을 소비할 때,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하는 일에 일조하게 되는 것이다.

네덜란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캠페인은 5월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이 캠페인은 FSC를 홍보하고 FSC 인증 임산품을 구매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현재 네덜란드 국민들 사이에서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 FSC에 대한 인지도를 10% 수준까지 끌어 올리려는 야심찬 목표를 갖고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는 FSC 인증상품을 판매하는 10개의 유통업체를 포함한 네덜란드의 30여 주요 임업관련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캠페인 기간 동안에는 FSC 인증 임산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라디오 방송광고나 출판물 배포 등 다양한 홍보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FSC를 주제로 하는 ‘숲 살리기 경연대회’도 개최되는데, 우승자에게는 아마존 열대림 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이번 FSC 캠페인은 국가적 규모로 전개되는 세계 최초의 ‘인증 임산품 소비자 캠페인’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제 소비자들에게는 책상 하나를 사더라도 지구의 숲에 대한 배려를 하도록 책임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료: Forest Stewardship Council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국제기구 논의동향

WTO 농업모델리티 협상동향 (2)

OECD 회원국의 농정평가보고서 발표

OECD 2001년 한국농업정책 평가

WTO 농업모델리티 협상동향 (2)

WTO 농업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에서 20일까지 WT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특별회의를 개최, 수출경쟁에 관한 모델리티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출보조금, 수출신용, 식량원조, 수출국영무역, 수출제한 및 수출세 등 5개 의제에 대해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검토가 있었다.

또 이번 회의에서 지난 3월의 ‘작업회의’에서 결정한 향후 모델리티 협상일정에 시장접근(7. 29-30)과 국내보조(9.5-6) 검토를 추가, 주요 국별로 논점을 정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농업 모델리티협상은 이를 시작으로 시장 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 등 3분야의 자유화원칙을 결정하는 것이며, 내년 3월말에 모델리티를 확정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제별로 주요 국가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한다.

1. 수출보조금

수출보조금은 비교적 다루기 쉬운 과제이기 때문에 먼저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다. 수출보조금에 대해서는 케언즈 그룹, 미국, 중국이 철폐를 주장하였고, EU, 일본 등이 점진적 감축을 주장하는 등 입장 차이를 보였다.

케언즈그룹은 2000년 양허수준(개도국 2004년)의 재정지출과 물량을 기준으로 이행 첫해에 50% 감축하고 그후 선진국은 3년간, 개도국은 6년간

에 철폐하도록 제안하였다. 또, 미국은 5년간 균등감축에 의한 철폐를 주장하였고, 중국도 이에 동조함으로써 EU에 대한 포위망이 형성되었다.

이에 대해 EU는 UR 방식¹⁾에 의한 점진적 감축을 주장했으며 스위스는 품목군별로 감축률을 달리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EU는 “수출신용 등 모든 수출보조조치를 협의대상으로 한다면 응할 용의가 있다”고 역습하였다.

숨겨진 수출보조금으로 비판받고 있는 미국의 수출신용과 케언즈그룹의 수출국영무역 등을 겨냥하였다. 실제 EU를 비난하고 있는 양자는 수출신용과 수출국영무역이라는 부분에서는 그동안 서로 비난해왔다.

일본은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불평등 해소를 요구하고, 모든 수출제한과 금지조치를 관세화하도록 제안하였다. 수출보조금은 폐지보다는 매년 일정금액 감축을 주장, EU를 측면 지원하는 자세를 보였다.

2. 수출신용

수출신용에 대해서는 케언즈그룹이 수출신용 중 수출 보조금적 성격을 지닌 부분이 있다고 하고, 관련규범을 제정하여 보조금적 수출신용은 금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이집트 등 식량 순수입국과 개도국들은 식량안보를 위해 최빈개도국 및 식량 순수입국에 대한 수출시 수출신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축성을 부여하여 특히 개도국에 대한 특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1) 수출보조금 감축의 UR 방식이란 금액기준 36%, 물량기준 21%를 6년간 감축하는 약속이다. 단지, 개도국은 10년간, 감축폭은 선진국의 3분의 2 수준이다.

표 1 WTO 농업협상 향후일정

일자	협상일정
2001. 11. 9-14	○ 제4차 각료회의(도하개발어젠다 채택, 뉴라운드 출범)
2002. 1. 28-2. 1 2. 4-7 3. 25- 6. 17-20 7. 29-30 9. 2-4 9. 5-6 9. 23-27 11. 18-22 12. 18 까지	○ 무역협상위원회(TNC) ○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제2단계 농업협상 종료) ○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제3단계 농업협상 시작) ○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수출경쟁 검토) ○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시장접근 검토) ○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시장접근 검토) ○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국내보조 검토) ○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국내보조 검토) ○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추가적인 협의사항 검토) ※의장이 모델리티초안 작성, 회원국에 배포
2003. 1. 22-24 2. 24-28 3. 25-31 9. 10-14 12. 31	○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의장안을 근거, 모델리티안 검토) ※향후 의장이 모델리티 1차안 작성, 차기 특별회의까지 회원국에 배포 ○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의장의 모델리티 1차안 검토) ○ 농업위원회 특별회의(모델리티 확정) ※향후 모델리티에 근거, 각국이 이행계획서 작성 ○ 제5차 각료회의(멕시코), 국별 이행계획서안 제출 ※향후 국별 이행계획서안 검증, 협상 ※평화조항 기한
2004	※협상 계속
2005. 1. 1	○ WTO 협상 종료

3. 수출국영무역

미국 등 대다수 국가들이 독점적 무역권·재정적 특혜에 대한 규제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규율 강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수출국영무역을 운영하고 있는 호주와 캐나다는 현행 규정만으로도 충분하다며 규율 강화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4. 식량원조 등

식량원조에 대해서는 일본이 식량부족이 발생한 개도국에 원조하는 새로운 ‘국제비축구상’을 제안하였다. 이에 인도네시아, 인도, 슬로바키아 등이 지지를 표명하였다.

한편, 순수한 의미의 식량원조와 수출 보조금 관련 규범 회피 목적의 식량원조를 구분하기 위해 EU는 국제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순수한 식량원조로 간주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스위스는 차관형식의 식량원조를 전체 식량원조의 일정수준으로 제한하고 무상원조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미국은 급박한 식량위기 상황에서 국제기구보다 개별국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출제한 및 수출세에 대해서는 케언즈그룹은 농업협정 12조(수출 금지 및 제한에 관한 규율)로도 충분하다며 의제 채택을 반대한 반면에, 미국, 일본, 스위스 등은 수출제한이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어 규범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일본은 수출제한과 수출세의 관세화와 개도국 특혜 등을 주장하였다.

5. 향후 전망

이번 협상을 통하여 중국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중국은 수출보조금의 철폐를 주장하였다. 농산물 수출국인 동시에 수입국이기도 한 중국은 개도국의 입장을 강조하였다. 즉, 선진국에게는 수출보조금 철폐를 요구하는 한편, 자국의 시장개방은 개도국을 이유로 방어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장접근, 국내보조에 대한 협상에서 중국의 대응방법이 주목되는 동시에, 중국과 협상연대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협상과제이다.

향후 농업모델리티협상은 시장접근, 국내보조 등의 분야로 계속된다. 특히 시장접근 협상에서는 관세율 인하, MMA 수준 등이 협의된다. 협상의 행방을 좌우하는 것은 가맹국 144개국 중 4분의 3을 차지하는 개도국의 대응이다.

모델리티안은 분야별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12월 18일까지 하빈슨 의장이 초안을 작성하여 가맹국에 배포한다. 이 초안을 가지고 내년 1월 22일로 예정된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 검토가 시작되기 때문에 초안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의장이 초안을 작성할 때 개도국을 비롯한 다수국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다.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OECD 회원국의 농정평가보고서 발표

OECD는 최근 발간한 농업정책 평가보고서를 통해 회원 각국들의 농업 정책 개혁이 지난해 매우 부진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OECD는 회원국들의 농업에 대한 지지수준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각국의 농업정책이 여전히 생산과 무역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 국가들이 지난해 농업부문 지지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총 3,470억 유로에 달했으며, 이와 같은 규모는 OECD 국가 총생산액의 1.3%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같은 지지규모는 지난 1986-88년간 평균 2.3%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한 것이다.

OECD 각국들이 지난해 각종 농업정책을 통해 농민들에게 지출한 각종 지원액의 총규모는 농업 총조수입액의 31%에 달했으며, 2000년도 32%보다 1%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이는 2000년도와 마찬가지로 지난해에도 가격지지감축이 계속돼 세계 농산물가격이 상승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2년 연속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에 대한 지지는 1997년도의 최저수준보다도 여전히 높은 것이다. 시장가격지지와 농업생산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은 여전히 농업부문에 대한 지지총액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1986-88년 82%).

한편, OECD 회원국 농민들은 국제시세보다 평균 31%나 높은 농산물 가격을 수취하고 있으며(1980년대에는 국제시세보다 58%나 높은 가격을 수

취했었다), 농업조수입을 국제시세로 환산했을 경우보다 45%나 더 많은 조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86-88년의 경우에는 62%).

OECD는 평가보고서에서 회원국들의 농업부문이 예전에 비해 시장메커니즘에 보다 가까이 접근하고 있으나, 국가별 및 품목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조수입에 대한 지지비율이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각각 1%와 4%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는 반면, 한국, 아이슬란드,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등은 60% 이상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EU 후보회원국들인 헝가리, 폴란드, 체코, 터키 등의 경우에는 20% 미만이며, EU 국가들의 경우에는 평균 35%,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국가들은 20% 안팎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쌀 80%, 양고기 55%, 설탕 및 우유 45%, 밀과 쇠고기 등은 36%이며, 설탕과 우유, 쌀에 대한 지지방식은 주로 가격지지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생산과 무역에 대한 시장왜곡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자료: OECD에서
(오현석 hsnu@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OECD 2001년 한국농업정책 평가

OECD는 1987년에 채택된 농업정책개혁 원칙에 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각료회의 요청에 따라서 매년 회원국들의 농업정책을 평가해 왔다. 1998년 OECD 농업각료들은 정책수단에 관한 운영기준과 농식품 부문에 대한 공동목표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를 농업정책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 출판된 OECD 농업정책 평가보고서(Agricultural Policies in OECD Countries, 2002)에 의하면 OECD 회원국의 농민에 대한 지지수준이 지난 2년 연속 감소했지만 최저 수준이었던 1997년보다는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1980년대 중반이후 농업지지 및 보호 수준이 낮아지고 보다 시장 지향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가격지지가 생산연계 보조금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지만 대다수 국가들이 이런 보조수단을 유지함으로써 국제시장의 신호를 농민들에게 잘 전달하지 못하고 생산이나 무역을 왜곡하고 있다. 일부 농업정책 개혁에도 불구하고 추진속도가 더디며, 그 수준 또한 불충분한 실정이다. 여기서는 OECD 농업정책 평가보고서에서 발표된 한국의 농업정책에 관한 평가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한다.

1. 주요 정책수단

한국의 농업정책은 정부수매 및 공공재고(public stockholding) 등 무역조치나 국내가격 안정화정책을 통해서 수행된 시장가격지지에 주로 의존하

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내외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서 토지개량과 영농합병 등 농업생산 기반구축을 통해서 농업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농업환경, 유통 및 기술개발 관련 정책들을 이행해 왔다. 직접지불(direct payment)이 도입되었으며, 절대적 규모는 미미하지만 최근 이 부문에 대한 예산비중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이들 정책들은 2000년 1월 시행된 농업농촌기본법(Agricultural and Rural Basic Law)에 의해서 강화되었다. 농업부문 시범사업에 배정하는 예산은 농업부문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더욱 제약을 받는다. 정부는 농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직접 무상용자를 장기저리용자로 대체하고 있다.

2. 국내정책

쌀에 대한 정부수매가격이 2000년에 5.5% 상승한데 이어 2001년에는 4.0% 상승했고, 수매량은 전년대비 8.6% 감소한 총생산량의 15% 수준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수매가격 상승과 함께, UR 농업협정의 보조총액측정치(Agregate Measure of Support, AMS)를 감축하기로 한 약속을 반영하여 부득이 하게 수매량을 조절하게 되었다.

최근 연속된 풍작과 함께, 민간 및 정부의 쌀 재고량은 2001년 소비량의 28% 수준으로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증산위주의 정책보다는 공급관리정책을 개선하고, 쌀의 품질을 높이는 새로운 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농민들은 농협(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NACF)이나 민간기업이 경영하는 미곡종합처리장(Rice Processing Complexes, RPC)에 대한 쌀 판매비중을 증가시키고 있다. RPC에서 관리되는 쌀 판매비중은

30%를 상회하며, 2001년까지 328개의 RPC가 운영되었다.

농협은 보리, 옥수수, 대두를 대상으로 가격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2001년에 농협은 보리와 대두의 수매가격을 각각 3.9%, 10% 인상했으며, 옥수수의 수매가격은 동결했다. 최근 정부는 보리, 옥수수, 대두의 생산량이 목표수준 이하인 것을 감안하여, 최초 계획한 수량을 전량 수매하지 못하였다.

2000년 초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 FMD) 발생으로 인해서 축산업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며, 마지막 구제역은 2000년 4월에 발생되었다. 2001년 9월에 국제수역사무국(International Office of Epizootics, OIE) 위원회는 한국을 FMD 미발생국으로 인정하였다. 한편 기술적인 조사를 통해서 국제역의 발생 요인중 하나가 중국 수입건초와 관광객인 것으로 밝혀진바 있다.

2001년 1월 쇠고기시장이 자유화되었다. 쇠고기 수입을 담당한 국영무역 기구인 축산물유통사업단(Livestock Products Marketing Organisation, LPMO)이 정리되었으며, 쇠고기 수입은 관세수입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쇠고기 생산이 2000년 감소에 이어 2001년에도 26%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비 또한 6% 감소하였다. 증가세 이후 최근 이러한 감소추세는 국내 경기침체와 세계 전역의 광우병 파동에 기인하고 있다. 2001년 쇠고기 수입이 40% 감소한데 반해 우유의 생산과 소비는 각각 4%, 5% 증가하였다. 정부는 위생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축에서부터 유통 과정에 이르기까지 자동화된 가공처리시설을 구축한 축산물종합처리장(Livestock Packing Centre, LPC)을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2001년 송아지사육안정화조치에 참여하는 농가의 수는 한우사육 농가의 50%에 달하는 12만 6,000 농가에 이르며, 소 사육두수는 34만 8,000두에 달했다. 송아지 두수 당 안정화 가격은 120만원(930\$)이며, 부족불지불

(deficiency payment)의 상한은 두수 당 25만원(194\$)으로 설정하고 있다. 농협은 이런 조치들을 2001년부터 관리해 왔다. 소 사육두수는 1997년에 270만두에서 2001년 9월 150만두로 매년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에 쇠고기 소비는 반대로 매년 1.2%씩 증가했다.

표 1 한국의 주요 곡물 수매가격 및 수매량

단위: 1,000원/톤(달러/톤), 1,000톤

		1997	1998	1999	2000	2001	변동율		
							1998 ~99	1999 ~00	2000 ~01
쌀 ¹	수매가격	1,647 (1,733)	1,738 (1,241)	1,825 (1,538)	1,925 (1,703)	2,002 (1,551)	5.0	5.5	4.0
	수매량	1,224	928	876	906	828	-5.6	3.4	-8.6
보리 ²	수매가격	926 (974)	977 (698)	1,026 (865)	1,067 (944)	1,109 (859)	5.0	4.0	3.9
	수매량	163	188	246	158	289	30.9	-35.8	82.9
옥수수 ¹	수매가격	478 (503)	504 (360)	529 (446)	580 (513)	580 (449)	5.0	9.6	0.0
	수매량	13	14	8	5	5	-42.9	-37.5	0.0
대두 ¹	수매가격	1,433 (1,508)	1,512 (1,080)	1,739 (1,465)	2,087 (1,846)	2,296 (1,779)	15.0	20.0	10.0
	수매량	5.49	6.15	2.22	4.11	5.50	-63.9	85.1	33.8

주 : 1. 정곡기준임.

2. 수매가격은 정곡기준이며, 수매량은 조곡기준임.

3. 수매가격의 ()안은 달러/톤 임.

정부는 2001년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농산물재해보험을 실시하였으며, 2002년에는 과수 부문으로 확대될 것이다. 2001년에 목표한 대상농가의 절반이 농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였다. 보험료의 50%는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농민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정부의 예산에 의해서 지원된다. 2002년도 예산지출액은 89억원(69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국의 농산물 유통정책은 유통시설을 확충하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이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정부는 운송, 물류서비스, 농민을 대상으로 한 유통정보 제공, 도매시장에 대한 규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전산화된 경매시스템이 29개의 과일시장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시장정보의 신속한 제공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실시간 정보망이 구축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전자상거래 등 농업인과 소비자간의 직거래가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서 유통체계를 간소화하고 유통마진을 줄이는데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 식품안전성 관련 정책들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농약 잔류량 점검 횟수를 2001년에 54,000회에서 2002년에 60,000회로 증가시키는 등 유통시점에서의 농산물의 농약 잔류량 점검체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가축을 대상으로 도상장이나 가공단계에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s Points, HACCP)을 적용하였다.

2001년 한국은 유전자변형(Genetically Modified, GM) 농산물을 대상으로 표시제(Labelling)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GM 대두, GM 옥수수, GM 콩나물 등은 2001년 3월부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서 유전자변형 농산물이라는 표시를 하여 판매되어야 한다. 또한 이런 GM 농산물을 함유하는 가공식품을 대상으로는 2001년 7월부터 표시제가 시행되었다. 식용에 대한 허용 혼입률을 3%로 설정하였으며, 혼입률이 0%인 경우를 제외하고 구분생산유통관리증명서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1년 3월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이 통과되었으며, 그 하위법률을 제정 중에 있다.

환경보전에 대한 새로운 직접지불이 2001년에 시행되었으며, 총예산은 2,105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런 직접지불은 농약 및 비료 사용을 절감하고, 영농기록에 관한 장부를 담당기관에 제출하는 논농업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2001년 해당 농민들은 농업진흥지역 여부에 따라 ha 당 20만원에서 25만원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

약이나 비료사용을 억제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ha 당 52만 4,000원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이 지원된다.

친환경농업육성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농기술의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비료나 농약의 사용을 절감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병해충종합관리(Integrated Pest Management, IPM)와 양분종합관리(Integrated Nutrient Management, INM)를 시행하는 시범마을이 1999-2002년 동안 34개소가 설치되었다. 지난 3년 동안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을 통해서 28개의 상수원보호구역이 설치되었다. 뿐만 아니라 유기 농산물에서 저농약 농산물 등으로 분류하는 등 유기 농산물에 대한 분류체계가 개선되었다.

도농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농촌지역의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 개선사업이 진행되었다. 2001년에 정부와 농협은 7만 5,000명을 대상으로 정보기술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농민 홈페이지 개설, 11개 품목에 대한 유통정보시스템 등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상당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1997년 이후 농민을 대상으로 한 일부 무상보조들은 농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의 융자로 전환되었다. 2002년에는 새로운 융자제도에 따라서 1,490억원(1억 1,500만 달러)의 예산이 지원될 것이다. 농민들은 예산한도 내에서 융자 활용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반면, 농장관리에 관해서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3. 무역정책

2001년 1월 한국은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였다. 무역조치는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주로 관세조치에 의존하고 있다. 1998년 경기침체로

부터 국내경제와 식품소비가 회복됨에 따라서 1999년에 비해 2000년 관세 할당량(tariff-rate quota, TRQ)이 증가하는 등 수입이 증가하였다. TRQ 대상 농산물 64개 품목 가운데 수입되지 않은 8개 품목을 제외하고, 37개 품목이 완전히 이행되었으며, 19개 품목은 부분적으로 이행되었다.

4. 종합평가

한국은 농업부문에 대한 지지수준이 높고 시장개방 정도가 매우 낮은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백분율 생산자보조추정치(percentage Producer Support Estimate, %PSE)로 측정된 생산자에 대한 지지수준이 1986-88년에 70%에서 1999-2001년에 66%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에 대한 지지수준은 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로 매우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지수준은 계란 15%에서 쌀 81%, 대두 89%에 이르는 등 품목마다 다양하다. 농업부문 일반서비스에 제공된 지지수준은 최근 4년 동안 점진적으로 감소했으며 이는 총지지추정치(Total Support Estimate, TSE)의 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분율 소비자보조추정치(percentage Consumer Support Estimate, %CSE)로 측정된 소비자에 대한 지지수준은 1986-1988년에 66%에서 1999-2001년에 62%로 감소하였다. 농업에 대한 총지지추정치가 1999-2001년 한국 GDP의 5%를 차지하는 등 OECD 회원국 중에서 매우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1999년 이후 시장가격지지(market price support)는 다소 감소하였으며, 생산자에 대한 예산지출이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에 대한 지원 대비 시장가격지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1986-88년에 99%인 것에 반해 2001년에는 93%로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투입재 보조금은 생산자지지의 3%에 달하는 등 주요 예산지출 항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들 보조금들은 무역을 왜곡하고 환경부하를 가중시키는 생산과 투입재 사용을 부추기는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더욱이 이들 조

치들은 농민에 대한 소득이전이나 환경혜택 제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이다. 총 농업소득에 근거한 보조금은 생산자지지의 3%만을 차지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국내가격과 국제가격간의 격차가 다소 감소했지만 시장가격지지로 인해서 2001년도 생산자가격과 소비자가격은 국제가격 수준의 3배에 달하였다. 2001년 총 농가 수입은 보조가 없는 경우보다 무려 180%나 증가하였다.

대체로 한국은 시장지향적인 정책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한국의 농업부문 지지수준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농업정책은 주로 생산과 무역을 왜곡하는 조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일부 농산물에 대한 보호수준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쌀 등 주요 농산물은 국제시장의 신호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었고, 농민들은 국제시장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결국 이는 한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남게 되었다.

최근 농업환경 및 농촌지역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들이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지지수준을 줄이고, 생산과 무역을 왜곡시키지 않는 지원수단으로 전환하며, 시장지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표 2 OECD 회원국의 농업보조

단위: 백만 달러

	1986-88	1999-01	1999	2000	2001 ¹
총생산액 ²	575,578	672,389	686,807	667,579	662,782
총소비액 ²	533,643	608,065	610,659	607,695	605,840
PSE	238,936	248,302	272,563	241,599	230,744
%PSE	38	33	35	32	31
CSE	-168,704	-153,815	-176,184	-148,136	-137,124
%CSE	-33	-26	-30	-25	-24
TSE	302,078	329,564	356,629	321,104	310,959
% TSE	2.3	1.3	1.4	1.3	1.3

주: 1. 전망치임.
2. 농가판매가격 기준임.

자료: OECD, PSE/CSE 데이터베이스 2002.

표 3 한국의 농업보조

단위: 백만 달러

	1986-88	1999-01	1999	2000	2001 ¹
총생산액 ²	13,624	32,066	31,857	31,829	32,510
총소비액 ²	14,367	36,523	36,203	36,469	36,895
PSE	12,120	18,170	18,335	19,337	16,838
%PSE	70	66	66	67	64
CSE	-11,817	-18,932	19,423	-20,402	-16,971
%CSE	-66	-62	-64	-63	-59
TSE	14,204	21,489	21,950	22,780	19,736
%TSE	10.0	5.0	5.4	5.0	4.7

주: 1. 전망치임.

2. 농가판매가격 기준이며 단위는 10억 원임.

자료: OECD, PSE/CSE 데이터베이스 2002.

자료: OECD

(김상현 ksh3615@krei.re.kr 02-3299-4369 농정연구센터)



세계 식료수급 정보

세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2002. 6)

세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2002. 6)

1. 전체 곡물의 수급 동향과 전망

1.1. 전체 곡물의 수급 동향과 전망

2002/03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18억 8,15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전망치보다도 약 3,000만 톤 정도 증가한 수준이다. 주요 곡물인 쌀의 생산량은 전년보다 줄어들지만, 소맥과 옥수수 등 기타 잡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02/03년도 총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4억 5,463만 톤과 생산량을 합친 23억 3,614만 톤으로, 전년보다 약 0.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2/03년도 세계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1.4% 늘어난 19억 2,027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9/00년도에는 생산량과 소비량이 거의 균형을 이루었으나 2000/01년도부터 2001/02년도까지는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나 그 차이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2002/03년도에는 소비량과 생산량의 차이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곡물 교역량(수출량 기준)도 전년 대비 0.3% 늘어나 2억 3,173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역량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3%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곡물 소비량이 생산량을 3,877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02/03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8.5% 감소한 4억 1,586만 톤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말재고율도 2001/02년도 24.0%에서 21.7%로 2.3%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세계 전체 곡물의 수급동향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0/01	2001/02 (추정)	2002/03(전망)		변동률(%)	
			2002. 5	2002.6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839.86	1,853.79	1,896.44	1,881.50	1.5	△0.8
공 급 량	2,370.56	2,348.10	2,353.34	2,336.14	△0.5	△0.7
소 비 량	1,876.25	1,893.47	1,920.15	1,920.27	1.4	0.0
교 역 량	233.17	229.87	230.94	231.73	0.8	0.3
기말재고량	494.31	454.63	433.18	415.86	△8.5	△0.4
기말재고율	26.3	24.0	22.6	21.7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87, June 12, 2002.

1.2. 쌀의 수급 동향과 전망

2002/03년도 쌀 생산량은 2001/02년 보다 0.4% 줄어든 3억 5,951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의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3.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2/03년도 쌀 소비량은 전년 대비 0.6% 늘어난 4억 1,000만 톤으로 전년도보다 약 230만 톤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2/03년도 세계 전체 쌀 교역량은 전년 대비 3.3% 늘어난 2,550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생산량에서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6.4%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의 수출량이 전년보다 2.1% 늘어난 397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쌀 기말재고량은 전년 대비 11.5%가 줄어든 1억 1,146만 톤 정도로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재고량은 늘어나지만 주요 쌀 생산국의 재고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02/03년도 기말재고율은 27.2%로 2001/02년도의 30.9%보다 약 4% 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국제 쌀(정곡기준) 수급 동향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0/01	2001/02 (추정)	2002/03(전망)		변동률(%)	
			2002.5	2002.6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397.67	397.00	395.51	359.51	△0.4	0.0
공 급 량	541.59	533.63	522.12	521.46	△2.3	△0.1
소 비 량	404.96	407.68	410.00	410.00	0.6	0.0
교 역 량	24.76	24.68	25.50	25.50	3.3	0.0
기말재고량	136.63	125.95	112.12	111.46	△11.5	0.6
기말재고율	33.7	30.9	27.3	27.2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87, June 12, 2002.

1.3. 소맥의 수급 동향과 전망

2002/03년도 세계 밀 생산량은 5억 8,978만 톤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호주, 러시아를 제외한 캐나다, 유럽 등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02/03년도 세계 밀 소비량은 2001/02년 5억 8,767만 톤보다 약 870만 톤 증가한 5억 9,641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국제 소맥 수급 동향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0/01	2001/02 (추정)	2002/03(전망)		변동률(%)	
			2002.5	2002.6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584.05	579.71	595.75	589.78	1.7	△1.0
공 급 량	761.15	750.37	758.90	758.48	1.1	△0.1
소 비 량	590.50	587.67	596.48	596.41	1.5	0.0
교 역 량	102.78	106.96	105.87	105.62	△1.3	△0.2
기말재고량	170.66	162.70	162.42	156.07	△4.1	△3.9
기말재고율	28.9	27.7	27.2	26.2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87, June 12, 2002.

밀의 국제 교역량은 2001/02년 1억 696만 톤까지 늘어났으나, 2002/03년에는 1억 562만 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에 대한 교역량의 비율은 17.9%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2/03년 기말재고량은 1억 5,607만 톤으로 전년보다 4.0%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재고량이 대폭 줄어들고, 기말재고율도 전년의 27.7%에서 26.2%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4. 옥수수의 수급 동향과 전망

2002/03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6억 650만 톤으로 전년보다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의 생산량은 크게 줄어드나 중국, 미국, EU의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02/03년의 소비량은 전년 대비 0.1% 증가한 6억 2,637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소비량이 생산량을 2,000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 국제 옥수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0/01	2001/02 (추정)	2002/03(전망)		변동률(%)	
			2002.5	2002.6	전년대비	전년대비
생 산 량	586.08	586.91	614.95	606.50	3.3	△1.4
공 급 량	757.19	738.40	739.39	729.03	△1.3	△1.4
소 비 량	605.71	615.87	625.67	626.37	1.7	0.1
교 역 량	77.25	70.15	71.38	72.55	3.4	1.6
기말재고량	150.49	122.53	113.72	102.66	△16.2	△9.7
기말재고율	25.0	19.9	18.2	16.4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87, June 12, 2002.

옥수수 교역량의 경우 전년보다 3.4% 증가한 7,255만 톤,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9%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수출량 중 미국과 아르헨티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72.6%, 8.9%로 이들 두 국가가 약 81.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2/03년 옥수수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9.7% 줄어든 1억 266만 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보다 2,000만 톤 정도 줄어든 수준이다. 주요 옥수수 생산국인 중국, 미국, 아르헨티나, EU의 기말재고량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2002/03년도 기말재고율도 전년보다 3.5% 포인트 줄어든 16.4%가 될 전망이다.

1.5. 대두의 수급 동향과 전망

2002/03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1억 8,384만 톤으로 전년보다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주요 대두 생산국의 생산량이 대부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브라질의 생산량이 전년 대비 11.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국제 대두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1999/00	2000/2001 (추정)	2001/2002(전망)		변동률(%)	
			2002. 4	2002. 5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59.90	175.10	184.13	183.84	5.0	△0.2
공 급 량	186.45	202.07	213.19	213.18	5.5	0.0
소 비 량	160.77	172.82	184.14	184.28	6.6	0.1
교 역 량	46.68	55.17	57.34	57.49	4.2	0.3
기말재고량	26.97	29.34	29.45	29.43	0.3	△0.1
기말재고율	16.7	17.0	16.0	16.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87, June 12, 2002.

대두 소비량은 전년보다 6.6% 늘어난 1억 8,428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과 소비량이 거의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2001/02년 세계 대두 교역량은 전년보다 4.2% 증가한 5,749만 톤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31.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전 세계 수출량에서 미국이 48.9%, 브라질이 29.2%, 아르헨티나가 13.1%의 비중을 차지하여 이들 세 국가의 수출비중이 91.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1/02년 대두의 기말 재고량은 2,943만 톤으로 전망되어 전년의 2,934만 톤과 비교하여 0.3%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기말재고율은 소비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보다 약 1% 포인트 낮은 16.0%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국제 곡물 가격 동향 및 전망

2.1. 쌀

중립종(자포니카 계) 쌀의 국제 가격은 1998년 9월 이후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1999년 7월에는 사상최고치인 톤당 556.66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01년 9월에는 톤당 253.53 달러까지 하락하였다. 이는 1988년 UR 농산물협상이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2001년 10월에는 톤당 314.16 달러까지 상승한 후 2002년 4월까지 이보다 약간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2년 6월(6월 13일 현재)에는 전년보다 4.5% 낮지만 전년동월보다는 2.0% 높은 톤당 281.09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태국산 장립종 쌀 가격은 1999년 10월 톤당 221.80 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조금씩 상승하여 2000년 2월 253.25 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등락을 거듭한 후 2002년 6월(6월 13일 현재)에는 전년 대비 12.3%, 전년동월 대비 11.1% 상승한 톤당 200 달러 수준이다.

2002/03년도 쌀 소비량과 교역량 늘어나지만 생산량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말재고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어서 2002/03년도 국제 쌀 가격은 약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2. 소맥

밀의 국제 가격은 1996년 5월 톤당 218.11달러까지 폭등한 이후 1997/98년의 대풍작에 따라 1997년에는 153.1달러로 하락하였다. 가격 하락에 따라 1998/99년의 식부면적이 줄어들어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세계 경기침

체에 따른 수요가 크게 감소하여 1998/99년의 국제 밀 가격은 120달러로 더욱 하락하였다.

국제 밀 가격은 1999년 12월에 톤당 112.44 달러까지 떨어졌으나, 2000년 상반기에는 110~118 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0년 8월에는 톤당 102.92 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상승하여 2002년 5월에는 124.47 달러까지 상승하였다. 2002년 6월(6월 13일 현재)에는 전월보다 5.4% 더 상승한 131.18 달러 수준이다. 이는 전년보다 3.4% 높으며 전년동월보다는 6.2% 더 높은 수준이다.

현재 기말재고량이 줄어들고 생산량이 유지될 전망이어서 2002/03년도 국제 소맥 가격은 약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3. 옥수수

1996년 5월 톤당 209달러까지 폭등했던 옥수수 국제 가격은 연속된 풍작으로 1999년 7월에는 85.42달러까지 폭락하였으나 이후 조금씩 회복하여 2000년 5월에는 톤당 102.67달러로 상승하였다.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0년 8월에는 톤당 80 달러로 하락함으로써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002년 6월(6월 13일 현재)에는 톤당 92.22 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0.8%, 전년동월 대비 7.6%, 전월 대비 1.5% 상승하였다.

기말재고량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어서 2002/03년도 국제 옥수수 가격은 이 수준에서 약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4. 대두

대두 국제 가격은 1997년 5월에 톤당 331 달러(미국 Gulf, 2등급, f.o.b.) 까지 상승하였으나, 1997/98, 1998/99년의 연이은 풍작에 따라 1998년에

234.33 달러, 1999년 7월에는 168.98 달러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0년 5월에는 톤당 211.72 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국제 가격이 하락하여 2000년 8월에는 톤당 178.87달러까지 하락하다가 12월에는 196.98 달러까지 상승하였다. 2002년 6월 현재에는 193.64 달러로 전년 대비 7.8%, 전년동월 대비 6.7%, 전월 대비 2.5% 상승하였다.

2001/02년도에는 소비량과 교역량이 늘어나고 생산량과 기말재고량이 약간 줄어들어 대두의 국제 가격은 약 상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6 국제 곡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FOB

품 목	2000 평균	2001 평균	2001.6	2002.5	2002.6	증감률(%)		
						전년 대비	전년 동월	전월 대비
쌀(중립종)	431.70	294.34	275.60	281.09	281.09	△4.5	2.0	0.0
쌀(장립종)	211.68	178.13	180.00	198.33	200.00	12.3	11.1	0.8
소 맥	110.28	126.91	123.50	124.47	131.18	3.4	6.2	5.4
옥수수	91.94	91.45	85.70	90.89	92.22	0.8	7.6	1.5
대 두	193.98	179.67	181.50	188.88	193.64	7.8	6.7	2.5

주: 쌀 중립종은 U.S. California, Medium 1등급, 장립종은 태국 1등급, 소맥은 US Portland, White Wheat 1등급 가격, 옥수수와 대두는 US Gulf 2등급 가격임.

표 7 세계 쌀(정곡기준)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0/01	2001/02 (추정)	2002/03(전망)		변동률(%)	
			2002.5	2002.6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541.59	533.63	522.12	521.46	△2.3	△0.1
기초재고량	143.92	136.63	126.61	125.95	△7.8	△0.5
생산량	397.67	397.00	395.51	395.51	△0.4	0.0
미국	5.94	6.76	6.51	6.51	△3.7	0.0
태국	16.90	16.50	16.50	16.50	0.0	0.0
베트남	20.47	20.63	20.60	20.60	△0.1	0.0
인도네시아	32.55	32.42	33.11	33.11	2.1	0.0
중국	131.54	126.00	126.00	126.00	0.0	0.0
일본	8.64	8.24	8.24	8.24	0.0	0.0
수입량	21.44	23.75	25.00	25.00	5.3	0.0
인도네시아	1.50	3.00	2.50	2.50	△16.7	0.0
중국	0.27	0.31	0.31	0.31	0.0	0.0
일본	0.68	0.70	0.70	0.70	0.0	0.0
소비량	404.96	407.68	410.00	410.00	0.6	0.0
미국	3.58	3.89	3.95	3.97	2.1	0.5
태국	9.40	9.50	9.50	9.50	0.0	0.0
베트남	17.28	17.40	17.40	17.40	0.0	0.0
인도네시아	35.88	36.36	36.36	36.36	0.0	0.0
중국	134.32	134.61	134.61	134.61	0.0	0.0
일본	9.00	9.00	9.00	9.00	0.0	0.0
수출량	24.76	24.68	25.50	25.50	3.3	0.0
미국	2.69	2.82	2.88	2.88	△0.3	0.0
태국	7.52	7.25	7.25	7.25	0.0	0.0
베트남	3.53	3.00	3.50	3.50	16.7	0.0
기말재고량	136.63	125.95	112.12	111.46	△11.5	△0.6
미국	0.89	1.28	1.40	1.36	6.3	△2.9
태국	1.69	1.44	1.44	1.44	0.0	0.0
인도네시아	4.54	3.61	4.05	4.05	12.2	0.0
중국	94.14	84.34	84.33	84.33	0.0	0.0
일본	1.67	1.46	1.39	1.39	△4.8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87, June 12, 2002.

표 8 세계 소맥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0/01	2001/02 (추정)	2002/03(전망)		변동률(%)	
			2002.5	2002.6	전년대비	전년대비
공급량	761.15	750.37	758.90	758.48	1.1	△0.1
기초재고량	177.10	170.66	163.15	162.70	△4.7	△0.3
생산량	584.05	579.71	595.75	595.78	2.8	0.0
미국	60.76	53.28	51.32	49.61	△6.9	△3.3
호주	23.77	24.00	24.50	23.00	△4.2	△6.1
캐나다	26.80	21.30	24.00	24.00	12.7	0.0
EU15	104.78	91.73	106.96	107.46	17.1	0.5
중국	99.64	94.00	96.00	94.00	0.0	△2.1
러시아	34.45	46.90	41.00	41.00	△12.6	0.0
수입량	101.61	106.69	104.50	104.00	△2.5	△0.5
EU15	3.16	9.00	4.00	4.00	△55.6	0.0
브라질	7.29	6.70	6.50	6.50	△3.0	0.0
북아프리카	18.28	15.60	16.20	15.90	1.9	△1.9
파키스탄	0.15	0.50	0.50	0.50	0.0	0.0
인도	0.06	0.10	0.10	0.10	0.0	0.0
러시아	1.60	0.50	1.00	1.00	100.0	0.0
소비량	590.50	587.67	596.48	596.41	1.5	0.0
미국	36.34	33.23	33.61	33.48	0.8	△0.4
EU15	91.98	91.93	94.10	94.60	2.9	0.5
중국	114.10	112.60	110.00	110.00	△2.3	0.0
파키스탄	20.50	19.80	20.00	20.00	1.0	0.0
러시아	35.16	38.00	39.50	39.50	3.9	0.0
수출량	102.78	106.96	105.87	105.62	△1.3	△0.2
미국	28.87	26.13	23.81	24.49	△6.3	2.9
캐나다	17.32	16.50	15.50	15.50	△6.1	0.0
EU15	15.23	10.00	12.00	12.50	25.0	4.2
기말재고량	170.66	162.70	162.42	156.07	△4.1	△3.9
미국	23.85	20.63	16.83	15.12	△26.7	△10.2
EU15	14.79	13.58	18.44	17.94	32.1	△2.7
중국	56.47	37.87	25.87	23.87	△37.0	△7.7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87, June 12, 2002.

표 9 세계 옥수수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0/01	2001/02 (추정)	2002/03(전망)		변동률(%)	
			2002.5	2002.6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757.19	738.40	739.39	729.03	△1.3	△1.4
기초재고량	171.11	151.49	124.44	122.53	△19.1	△1.5
생산량	586.08	586.91	614.95	606.50	3.3	△1.4
미국	251.85	241.49	252.36	245.12	1.5	△2.9
아르헨티나	15.40	13.00	11.00	11.00	△15.4	0.0
EU15	37.46	38.81	39.34	39.34	1.4	0.0
멕시코	17.92	19.60	19.00	19.00	△3.1	0.0
동남아시아	15.17	14.99	14.70	14.70	△1.9	0.0
중국	106.00	110.00	120.00	120.00	9.1	0.0
수입량	74.81	72.20	70.35	71.55	△0.9	1.7
EU15	2.86	2.75	2.50	2.50	△9.1	0.0
일본	16.34	16.00	15.00	15.50	△3.1	3.3
멕시코	5.93	5.00	6.00	6.00	20.0	0.0
동남아시아	4.24	3.93	4.13	4.13	5.1	0.0
한국	8.74	8.50	8.00	8.50	0.0	6.3
소비량	605.71	615.87	625.67	626.37	1.7	0.1
미국	198.26	199.91	200.92	200.92	0.5	0.0
EU15	40.30	41.60	41.70	41.70	0.2	0.0
일본	16.20	15.90	15.20	15.70	△1.3	3.3
멕시코	24.00	25.00	25.50	25.50	2.0	0.0
동남아시아	18.85	18.71	18.56	18.56	△0.8	0.0
한국	8.70	8.65	8.20	8.65	0.0	5.5
중국	120.00	124.00	126.00	126.00	1.6	0.0
수출량	77.25	70.15	71.38	72.55	3.4	1.6
미국	49.16	48.90	53.34	52.71	7.8	△1.2
아르헨티나	9.68	8.50	6.50	6.50	△23.5	0.0
중국	7.28	6.50	4.00	6.00	△7.7	50.0
기말재고량	151.49	122.53	113.72	102.66	△16.2	△9.7
미국	48.24	41.17	39.65	33.05	△19.7	△16.6
아르헨티나	0.64	0.60	0.52	0.52	△13.3	0.0
EU15	3.38	3.14	3.03	3.03	△3.5	0.0
중국	81.13	60.73	52.38	49.73	△18.1	△5.1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87, June 12, 2002.

표 10 세계 대두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1999/00	2000/01 (추정)	2001/02(전망)		변동률(%)	
			2002.5	2002.6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186.45	202.07	213.19	213.18	5.5	0.0
기초재고량	26.55	26.97	29.06	29.34	8.8	1.0
생산량	159.90	175.10	184.13	183.84	5.0	△0.2
미국	72.22	75.06	78.67	78.67	4.8	0.0
아르헨티나	21.20	27.80	29.50	29.50	6.1	0.0
브라질	34.20	39.00	43.50	43.50	11.5	0.0
중국	14.29	15.40	15.45	15.45	0.3	0.0
수입량	47.97	55.26	57.74	58.02	5.0	0.5
EU15	15.66	18.93	20.72	20.68	9.2	△0.2
일본	4.91	4.77	5.00	5.00	4.8	0.0
중국	10.10	13.25	11.00	11.00	△17.0	0.0
소비량	160.77	172.82	184.14	184.28	6.6	0.1
미국	47.39	49.10	50.65	50.80	3.5	0.3
아르헨티나	18.05	18.40	21.39	21.39	16.3	0.0
브라질	23.19	24.87	25.81	25.91	4.2	0.4
EU15	15.71	18.64	20.56	20.20	8.4	△1.8
일본	5.05	5.08	5.19	5.19	2.2	0.0
중국	22.89	26.70	28.62	28.62	7.2	0.0
수출량	46.68	55.17	57.34	57.49	4.2	0.3
미국	26.54	27.21	27.76	28.17	3.5	1.5
아르헨티나	4.13	7.42	7.70	7.55	1.8	△1.9
브라질	11.16	15.47	17.10	16.80	8.6	△1.8
기말재고량	26.97	29.34	29.45	29.43	0.3	△0.1
미국	7.90	6.74	7.08	6.52	△3.3	△7.9
아르헨티나	5.52	7.93	8.74	8.89	12.1	1.7
브라질	7.65	7.21	8.70	8.90	23.4	2.3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87, June 12, 2002.

(성명환 mhsung@krei.re.kr 02-3299-4366 농산업경제연구센터)



통 계 자 료

- 표 1 국별 밀 통계(한국)
- 표 2 국별 밀 통계(북한)
- 표 3 국별 밀 통계(일본)
- 표 4 국별 밀 통계(중국)
- 표 5 국별 밀 통계(몽고)
- 표 6 국별 밀 통계(인도)
- 표 7 국별 밀 통계(파키스탄)
- 표 8 국별 밀 통계(방글라데시)
- 표 9 국별 밀 통계(아프가니스탄)
- 표 10 국별 밀 통계(이란)
- 표 11 국별 밀 통계(이라크)
- 표 12 국별 밀 통계(터키)
- 표 13 국별 밀 통계(사우디아라비아)
- 표 14 국별 밀 통계(시리아)

표 1 국별 밀 통계(한국)

연도	생산면적 (천ha)	단수 (톤/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율 (%)	자급률 (%)
1961	76	2.26	172	0	413	585	0	29.4
1962	81	2.03	164	0	913	1077	0	15.2
1963	84	1.65	139	0	834	973	0	14.3
1964	90	2.11	190	0	528	718	0	26.5
1965	93	1.98	184	0	600	784	0	23.5
1966	94	2.05	193	0	654	847	0	22.8
1967	97	2.17	211	0	1126	1242	7.7	17
1968	94	2.38	224	0	1369	1402	20.4	16
1969	97	2.26	219	0	1254	1421	23.8	15.4
1970	87	2.25	196	0	1384	1656	15.8	11.8
1971	63	2.37	149	0	1778	2033	7.7	7.3
1972	43	2.33	100	0	1772	1896	7	5.3
1973	36	2.06	74	0	1427	1497	9.1	4.9
1974	44	2.2	97	0	1584	1704	6.6	5.7
1975	37	2.22	82	0	1857	1816	13	4.5
1976	27	1.67	45	0	1979	1981	14.1	2.3
1977	17	2.12	36	0	1587	1691	12.5	2.1
1978	13	3.23	42	0	1652	1741	9.4	2.4
1979	13	3.23	42	0	1810	1874	7.6	2.2
1980	28	3.29	92	0	2095	2069	12.6	4.5
1981	20	2.85	57	0	1868	1983	10.2	2.9
1982	20	3.3	66	0	1880	1980	8.5	3.3
1983	26	4.31	112	0	2351	2356	11.7	4.8
1984	6	2.83	17	0	3111	2988	13.9	0.6
1985	3	3.67	11	0	3032	3145	9.9	0.3
1986	2	2.5	5	4	3895	3844	9.5	0.1
1987	1	4	4	5	4459	4282	12.6	0.1
1988	1	2	2	5	2822	3283	2.4	0.1
1989	1	1	1	8	2009	1992	4.4	0.1
1990	1	1	1	25	4206	3525	21.1	0
1991	1	1	1	27	4396	4846	5.5	0
1992	1	1	1	38	3994	3481	21.4	0
1993	1	1	1	32	5647	5619	13.2	0
1994	2	1	2	50	4293	4245	17.5	0.1
1995	2	5	10	59	2554	2496	30.1	0.4
1996	3	3.67	11	65	3465	3351	24.2	0.3
1997	1	5	5	82	3917	3850	20.8	0.1
1998	1	5	5	96	4689	4548	18.7	0.1
1999	2	3	6	124	3811	3493	30.1	0.2
2000	1	2	2	128	3127	3001	35	0.1
2001	1	3	3	100	4300	4303	22.1	0.1

표 2 국별 밀 통계(북한)

연도	생산면적 (천ha)	단수 (톤/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율 (%)	자급률 (%)
1961	168	0.51	85	0	240	325	0	26.1
1962	165	0.53	87	0	128	215	0	40.5
1963	165	0.57	94	0	107	201	0	46.8
1964	163	0.6	98	0	108	206	0	47.6
1965	163	0.54	88	0	382	470	0	18.7
1966	160	0.6	96	0	528	624	0	15.4
1967	160	0.57	91	0	44	135	0	67.4
1968	155	0.56	87	0	331	418	0	20.8
1969	150	0.59	88	0	311	399	0	22.1
1970	145	0.61	88	0	274	362	0	24.3
1971	135	0.67	91	0	480	571	0	15.9
1972	125	0.7	87	0	694	781	0	11.1
1973	115	0.85	98	0	978	1076	0	9.1
1974	105	0.97	102	0	429	531	0	19.2
1975	95	1.12	106	0	345	451	0	23.5
1976	90	1.2	108	0	327	435	0	24.8
1977	85	1.35	115	0	74	189	0	60.9
1978	85	1.31	111	0	149	260	0	42.7
1979	85	1.35	115	0	226	341	0	33.7
1980	85	1.16	99	0	368	467	0	21.2
1981	85	1.34	114	0	398	512	0	22.3
1982	85	1.42	121	0	200	321	0	37.7
1983	85	1.46	124	0	500	624	0	19.9
1984	85	1.55	132	0	550	682	0	19.4
1985	85	1.49	127	0	550	677	0	18.8
1986	90	1.59	143	0	244	387	0	37
1987	90	1.48	133	0	373	506	0	26.3
1988	90	1.42	128	0	100	228	0	56.1
1989	80	1.61	129	0	185	314	0	41.1
1990	90	1.29	116	0	659	775	0	15
1991	90	1.5	135	0	693	828	0	16.3
1992	90	1.37	123	0	333	456	0	27
1993	90	1.37	123	0	185	308	0	39.9
1994	90	1.39	125	0	153	278	0	45
1995	75	1	75	0	189	264	0	28.4
1996	70	1.07	75	0	531	606	0	12.4
1997	70	1.07	75	0	679	754	0	9.9
1998	90	1.11	100	0	703	803	0	12.4
1999	125	2	250	0	334	584	0	42.8
2000	90	1.67	150	0	500	650	0	23.1
2001	90	1.11	100	0	500	600	0	16.7

표 3 국별 밀 통계(일본)

연도	생산면적 (천ha)	단수 (톤/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율 (%)	자급률 (%)
1961	649	2.74	1781	83	2772	4165	25.9	42.8
1962	642	2.54	1631	83	2662	4390	20.5	37.1
1963	584	1.23	716	79	3918	4455	22.4	16.1
1964	508	2.45	1244	79	3545	4710	21.2	26.4
1965	476	2.7	1287	134	3526	4704	20.7	27.4
1966	421	2.43	1024	77	4260	4967	24.5	20.6
1967	367	2.72	997	121	4029	5070	20.7	19.7
1968	322	3.14	1012	82	4189	5169	19.4	19.6
1969	287	2.64	758	57	4424	5265	16.3	14.4
1970	229	2.07	474	35	4834	5183	18.3	9.2
1971	166	2.65	440	43	4964	5311	18.8	8.3
1972	115	2.47	284	42	5486	5558	21.1	5.1
1973	75	2.69	202	30	5353	5585	19.9	3.6
1974	83	2.8	232	29	5404	5567	20.7	4.2
1975	90	2.68	241	36	5923	5778	26	4.2
1976	89	2.49	222	36	5521	5737	25.6	3.9
1977	86	2.74	236	50	5764	5815	27.6	4.1
1978	112	3.27	366	88	5744	6066	25.7	6
1979	149	3.63	541	111	5599	6090	24.6	8.9
1980	191	3.05	583	138	5840	6095	27.7	9.6
1981	224	2.62	587	160	5577	6069	26.8	9.7
1982	228	3.25	742	254	5795	6092	29.8	12.2
1983	229	3.04	695	305	5857	6210	29.8	11.2
1984	232	3.19	741	269	5603	6267	26.5	11.8
1985	234	3.73	874	281	5532	6192	25.7	14.1
1986	246	3.56	876	391	5577	6100	25.5	14.4
1987	271	3.19	864	393	5497	5994	25.5	14.4
1988	282	3.62	1021	404	5111	5742	26.4	17.8
1989	284	3.47	985	398	5413	5919	27	16.6
1990	260	3.66	952	435	5552	6047	26.8	15.7
1991	239	3.18	759	448	5873	6235	25.1	12.2
1992	215	3.53	759	453	5958	6418	22	11.8
1993	184	3.47	638	443	5993	6350	19.7	10.1
1994	152	3.72	565	472	6310	6380	20	8.9
1995	151	2.94	444	576	6101	6380	13.5	7
1996	159	3.01	478	412	6264	6144	17.1	7.8
1997	158	3.63	573	389	6200	6109	21.7	9.4
1998	162	3.52	570	417	5959	6112	21.7	9.3
1999	169	3.45	583	634	5960	5909	22.4	9.9
2000	183	3.76	688	454	5911	5824	28.3	11.8
2001	190	3.68	700	600	5800	6025	25.2	11.6

표 4 국별 밀 통계(중국)

연도	생산면적 (천ha)	단수 (톤/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율 (%)	자급률 (%)
1961	25572	0.56	14250	122	4893	20521	7.3	69.4
1962	24075	0.69	16665	89	4892	19268	19.2	86.5
1963	23771	0.78	18475	113	5208	23070	18.2	80.1
1964	25408	0.82	20840	115	5032	26257	14.1	79.4
1965	24709	1.02	25220	4	6282	30998	13.6	81.4
1966	23919	1.06	25280	30	5025	30275	13.9	83.5
1967	25299	1.13	28485	13	4156	29628	24.3	96.1
1968	24658	1.11	27455	1	3537	30991	23.2	88.6
1969	25162	1.08	27285	1	5125	32909	20.4	82.9
1970	25458	1.15	29185	3	3661	32343	22.3	90.2
1971	25639	1.27	32575	5	2968	33538	27.4	97.1
1972	26302	1.37	35985	5	5290	37270	35.4	96.5
1973	26439	1.33	35225	5	5645	41365	30.7	85.2
1974	27061	1.51	40865	5	5746	41606	42.5	98.2
1975	27661	1.64	45310	0	2200	43510	49.9	104.1
1976	28417	1.77	50385	0	3158	48543	55	103.8
1977	28065	1.46	41075	0	8600	51675	47.8	79.5
1978	29183	1.85	53840	0	8047	52887	63.7	101.8
1979	29357	2.14	62730	0	8865	66595	58.1	94.2
1980	29228	1.89	55210	0	13789	75999	41.7	72.7
1981	28307	2.11	59640	0	13200	78840	32.6	75.7
1982	27955	2.45	68470	0	13000	79470	34.9	86.2
1983	29050	2.8	81390	0	9600	82990	43	98.1
1984	29576	2.97	87815	0	7400	89105	46.9	98.5
1985	29218	2.94	85810	0	6600	95155	41	90.2
1986	29616	3.04	90040	7	8817	97265	41.8	92.6
1987	28798	2.98	85840	7	15327	99040	43.2	86.7
1988	28785	2.97	85432	8	15384	100826	42.4	84.7
1989	29841	3.04	90807	8	12800	102367	43	88.7
1990	30753	3.19	98229	8	9409	103981	45.8	94.5
1991	30948	3.1	96000	10	15863	107763	48	89.1
1992	30500	3.33	101590	184	6728	106641	49.9	95.3
1993	30240	3.52	106390	631	4320	107728	51.6	98.8
1994	28981	3.43	99300	411	10256	108969	51.1	91.1
1995	28860	3.54	102215	496	12531	110148	54.3	92.8
1996	29610	3.73	110570	969	2705	111298	54.7	99.3
1997	30057	4.1	123289	1162	1916	113773	62.5	108.4
1998	29774	3.68	109726	542	829	114701	57.9	95.7
1999	28855	3.95	113880	542	1010	115625	56.4	98.5
2000	26650	3.74	99640	623	195	113895	44.3	87.5
2001	25200	3.73	94000	1000	1500	113500	27.7	82.8

표 5 국별 밀 통계(몽고)

연도	생산면적 (천ha)	단수 (톤/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율 (%)	자급률 (%)
1961	267	0.37	98	0	40	138	0	71
1962	320	0.9	288	0	52	340	0	84.7
1963	348	0.84	291	0	8	299	0	97.3
1964	356	0.94	335	0	22	357	0	93.8
1965	362	0.8	291	0	66	357	0	81.5
1966	343	0.66	227	0	21	248	0	91.5
1967	344	0.84	289	0	16	305	0	94.8
1968	346	0.54	188	0	16	204	0	92.2
1969	347	0.33	114	0	26	140	0	81.4
1970	348	0.72	250	0	105	355	0	70.4
1971	333	0.95	316	0	55	371	0	85.2
1972	314	0.54	170	0	50	220	0	77.3
1973	307	1.11	340	0	15	355	0	95.8
1974	305	0.82	250	0	15	265	0	94.3
1975	316	1.16	366	0	15	381	0	96.1
1976	324	0.86	280	0	59	339	0	82.6
1977	351	0.91	318	0	93	411	0	77.4
1978	360	1.11	400	0	43	443	0	90.3
1979	360	0.97	350	0	40	390	0	89.7
1980	408	0.51	207	0	40	247	0	83.8
1981	410	0.67	275	0	50	325	0	84.6
1982	410	0.71	290	0	50	340	0	85.3
1983	410	0.73	300	0	50	350	0	85.7
1984	461	1	460	0	0	460	0	100
1985	482	1.43	689	0	0	689	0	100
1986	467	1.42	664	0	0	664	0	100
1987	470	1.15	543	0	0	543	0	100
1988	475	1.34	635	0	0	635	0	100
1989	475	1.37	650	0	0	650	0	100
1990	475	1.26	600	0	30	630	0	95.2
1991	475	1.26	600	0	9	609	0	98.5
1992	590	0.83	490	0	39	529	0	92.6
1993	545	0.88	480	0	145	625	0	76.8
1994	450	0.73	330	14	34	350	0	94.3
1995	355	0.73	260	0	50	310	0	83.9
1996	300	0.73	220	0	130	350	0	62.9
1997	300	0.73	220	0	139	359	0	61.3
1998	300	0.63	190	0	159	349	0	54.4
1999	300	0.67	200	0	106	306	0	65.4
2000	300	0.5	150	0	180	330	0	45.5
2001	300	0.5	150	0	200	350	0	42.9

표 6 국별 밀 통계(인도)

연도	생산면적 (천ha)	단수 (톤/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율 (%)	자급률 (%)
1961	12927	0.85	10995	0	2798	13893	20.1	79.1
1962	13570	0.89	12076	0	3546	14822	24.3	81.5
1963	13590	0.79	10779	0	4275	16054	16.2	67.1
1964	13499	0.73	9854	0	5977	16531	11.5	59.6
1965	13422	0.91	12258	0	7157	18115	17.7	67.7
1966	12572	0.83	10394	0	8030	19324	11.9	53.8
1967	12838	0.89	11393	0	6393	17786	12.9	64.1
1968	14998	1.1	16540	1	4355	19294	20.2	85.7
1969	15958	1.17	18651	14	3188	21725	18.4	85.8
1970	16626	1.21	20093	13	2927	22007	22.7	91.3
1971	18241	1.31	23832	5	1749	23576	29.7	101.1
1972	19139	1.38	26410	667	502	28245	17.7	93.5
1973	19463	1.27	24735	0	3243	30178	9.3	82
1974	18583	1.17	21778	0	4970	27048	9.2	80.5
1975	18010	1.34	24104	0	6900	27004	24.1	89.3
1976	20454	1.41	28846	0	5066	28412	42.2	101.5
1977	20922	1.39	29010	536	298	30772	32.5	94.3
1978	21456	1.48	31749	614	50	33685	22.3	94.2
1979	22641	1.57	35508	481	0	36027	18	98.6
1980	22172	1.44	31830	55	50	34325	11.7	92.7
1981	22279	1.63	36313	0	2000	36313	16.5	100
1982	22144	1.69	37452	100	2486	37838	21.1	99
1983	23567	1.82	42794	35	3270	42029	28.6	101.8
1984	24672	1.84	45476	100	700	43076	34.8	105.6
1985	23564	1.87	44069	400	50	43719	34.3	100.8
1986	22997	2.05	47052	500	15	45567	35.1	103.3
1987	23131	1.92	44323	500	10	56492	5.9	78.5
1988	23063	2	46169	20	2100	48929	5.4	94.4
1989	24109	2.24	54110	20	100	53201	6.9	101.7
1990	23502	2.12	49850	200	100	47595	12.2	104.7
1991	24167	2.28	55134	680	100	58009	4	95
1992	23260	2.39	55690	50	2500	57515	5.2	96.8
1993	24589	2.33	57210	28	500	53377	13.6	107.2
1994	25100	2.38	59840	100	30	58330	14.9	102.6
1995	25600	2.56	65470	1500	50	64978	11.9	100.8
1996	25011	2.48	62097	2000	1445	66064	4.9	94
1997	25887	2.68	69350	0	1731	69246	7.3	100.2
1998	26700	2.48	66350	0	2203	63707	15.6	104.2
1999	27400	2.58	70780	200	1372	68793	19	102.9
2000	27486	2.78	76369	1569	46	66426	32.4	115
2001	25068	2.74	68763	3000	100	60363	44.7	113.9

표 7 국별 밀 통계(파키스탄)

연도	생산면적 (천ha)	단수 (톤/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율 (%)	자급률 (%)
1961	4639	0.82	3814	0	1143	4465	22.8	85.4
1962	4923	0.82	4027	0	1637	5378	24.2	74.9
1963	5022	0.83	4170	0	1515	5871	19	71
1964	5019	0.83	4162	0	1785	6645	6.3	62.6
1965	5318	0.86	4591	0	1236	5835	7	78.7
1966	5155	0.76	3916	0	1759	5858	3.9	66.8
1967	5344	0.81	4334	0	2131	6334	5.7	68.4
1968	5983	1.07	6418	2	756	6918	8.8	92.8
1969	6160	1.07	6618	0	1085	7678	8.3	86.2
1970	6229	1.17	7294	0	1075	8356	7.8	87.3
1971	5978	1.08	6476	0	1027	7458	9.3	86.8
1972	5799	1.19	6890	0	1468	8115	11.6	84.9
1973	5973	1.31	7800	0	1106	8744	12.6	89.2
1974	6113	1.28	7800	0	1135	8692	15.4	89.7
1975	5813	1.32	7674	0	1289	9148	12.7	83.9
1976	6111	1.42	8690	0	507	9705	6.7	89.5
1977	6390	1.43	9143	0	800	9885	7.2	92.5
1978	6360	1.32	8367	0	2111	10036	11.5	83.4
1979	6687	1.49	9950	0	668	10770	9.3	92.4
1980	6924	1.57	10857	0	320	11200	8.7	96.9
1981	6982	1.64	11473	0	346	11215	14.1	102.3
1982	7223	1.57	11304	78	570	11521	16.1	98.1
1983	7398	1.68	12414	205	393	12000	20.5	103.5
1984	7326	1.49	10882	49	1042	12312	16.4	88.4
1985	7403	1.58	11703	0	1832	12754	21.9	91.8
1986	7363	1.89	13922	0	374	13200	29.5	105.5
1987	7706	1.56	12020	0	505	13800	19	87.1
1988	7308	1.73	12675	0	2200	14886	17.5	85.2
1989	7730	1.87	14419	0	1916	15316	23.7	94.1
1990	7845	1.84	14429	0	1026	16206	17.8	89
1991	7911	1.84	14565	10	2217	16907	16.2	86.2
1992	7878	1.99	15684	50	2862	17405	22	90.1
1993	8300	1.95	16157	0	1617	17900	20.7	90.3
1994	8034	1.89	15212	6	2123	18137	16	83.9
1995	8170	2.08	17002	1	1903	18904	15.3	89.9
1996	8376	2.02	16907	1	3018	20124	13.4	84
1997	8110	2.05	16650	12	4130	20258	15.8	82.2
1998	8355	2.24	18694	0	3130	21284	17.6	87.8
1999	8231	2.17	17854	0	2100	20452	15.9	87.3
2000	8463	2.49	21079	253	150	20500	18.2	102.8
2001	8250	2.31	19023	1000	500	19500	14.1	97.5

표 8 국별 밀 통계(방글라데시)

연도	생산면적 (천ha)	단수 (톤/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율 (%)	자급률 (%)
1961	57	0.58	33	0	0	33	0	100
1962	59	0.68	40	0	0	40	0	100
1963	74	0.61	45	0	0	45	0	100
1964	57	0.61	35	0	0	35	0	100
1965	53	0.66	35	0	0	35	0	100
1966	55	0.65	36	0	0	36	0	100
1967	73	0.81	59	0	0	59	0	100
1968	78	1.15	90	0	0	90	0	100
1969	117	0.86	101	0	0	101	0	100
1970	120	0.89	107	0	0	107	0	100
1971	126	0.89	112	0	1071	1183	0	9.5
1972	110	1.04	115	0	2396	2511	0	4.6
1973	105	1.06	111	0	1559	1670	0	6.7
1974	105	1.11	116	0	1994	2110	0	5.5
1975	169	1.29	218	0	1032	1250	0	17.4
1976	180	1.44	259	0	613	872	0	29.7
1977	212	1.64	348	0	1679	1698	19.4	20.5
1978	265	1.86	494	0	2054	2770	3.9	17.8
1979	433	1.93	836	0	2055	2531	18.4	33
1980	591	1.85	1093	0	993	1997	27.8	54.7
1981	534	1.81	967	0	1111	2357	11.8	41
1982	519	2.11	1095	0	1500	2546	12.8	43
1983	530	2.28	1210	0	1876	2702	26.3	44.8
1984	676	2.17	1464	0	1898	3530	15.3	41.5
1985	540	1.93	1042	0	1164	2125	29.3	49
1986	585	1.87	1091	0	1614	2815	18.2	38.8
1987	585	1.87	1091	0	1873	2923	18.9	37.3
1988	560	1.82	1020	0	2207	3204	18	31.8
1989	592	1.5	890	0	1179	2316	14.2	38.4
1990	599	1.68	1004	0	1399	2221	23.1	45.2
1991	599	1.68	1004	0	1457	2551	16.5	39.4
1992	575	1.85	1065	0	1051	2138	18.7	49.8
1993	637	1.85	1176	0	1065	2241	17.9	52.5
1994	615	1.84	1131	0	1707	2738	18.3	41.3
1995	639	1.95	1245	0	1243	2558	16.8	48.7
1996	701	1.95	1370	0	957	2257	22.1	60.7
1997	708	2.05	1454	0	839	2489	12.2	58.4
1998	805	2.24	1803	0	2032	3839	7.8	47
1999	805	2.47	1988	0	1624	3412	14.7	58.3
2000	773	2.16	1673	0	1293	2866	20.9	58.4
2001	750	2.33	1750	0	1100	2950	16.9	59.3

표 9 국별 밀 통계(아프가니스탄)

연도	생산면적 (천ha)	단수 (톤/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율 (%)	자급률 (%)
1961	2230	1.02	2279	0	15	2294	0	99.3
1962	2341	0.97	2279	0	7	2286	0	99.7
1963	2341	0.83	1947	0	80	2027	0	96
1964	2345	0.96	2250	0	60	2310	0	97.4
1965	2347	0.97	2282	0	107	2264	5.5	100.8
1966	2345	0.87	2033	0	119	2197	3.6	92.5
1967	2352	0.97	2280	0	25	2315	3	98.5
1968	2036	1.16	2354	0	112	2481	2.2	94.9
1969	2070	1.19	2454	0	150	2559	3.9	95.9
1970	2176	0.96	2081	0	43	2154	3.2	96.6
1971	2350	0.81	1915	0	220	2177	1.3	88
1972	2897	0.85	2450	0	55	2478	2.2	98.9
1973	2236	1.23	2750	0	63	2585	10.9	106.4
1974	2278	1.21	2750	0	5	2988	1.7	92
1975	2350	1.19	2800	0	10	2810	1.8	99.6
1976	2400	1.23	2940	0	9	2949	1.7	99.7
1977	2450	1.18	2900	0	200	3050	3.3	95.1
1978	2300	1.22	2800	0	200	3050	1.6	91.8
1979	2400	1.11	2663	0	200	2913	0	91.4
1980	2200	1.25	2750	0	320	3070	0	89.6
1981	2300	1.24	2850	0	350	3200	0	89.1
1982	2250	1.27	2860	0	350	3210	0	89.1
1983	2321	1.23	2850	0	350	3200	0	89.1
1984	2313	1.19	2750	0	350	3100	0	88.7
1985	2315	1.25	2900	0	350	3250	0	89.2
1986	2315	1.23	2850	0	0	2850	0	100
1987	1619	1.19	1925	0	1	1926	0	100
1988	1619	1.19	1925	0	0	1925	0	100
1989	1619	1.19	1925	0	8	1933	0	99.6
1990	1600	1.03	1650	0	5	1655	0	99.7
1991	1600	1.03	1650	0	15	1665	0	99.1
1992	1600	1.03	1650	0	18	1668	0	98.9
1993	1650	1.09	1800	0	93	1893	0	95.1
1994	1800	1.28	2300	0	32	2332	0	98.6
1995	1950	1.28	2500	0	125	2625	0	95.2
1996	2000	1.33	2650	0	76	2726	0	97.2
1997	2125	1.27	2710	0	90	2800	0	96.8
1998	2186	1.3	2834	0	42	2876	0	98.5
1999	2027	1.22	2480	0	350	2830	0	87.6
2000	2029	0.72	1469	0	500	1969	0	74.6
2001	1300	0.77	1000	0	1000	2000	0	50

표 10 국별 밀 통계(이란)

연도	생산면적 (천ha)	단수 (톤/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율 (%)	자급률 (%)
1961	3400	0.82	2800	0	192	3020	13.6	92.7
1962	3500	0.77	2700	0	330	3030	13.6	89.1
1963	3600	0.83	3000	0	138	3250	9.2	92.3
1964	3400	0.76	2600	0	622	3220	9.4	80.8
1965	3700	0.78	2900	0	143	2967	12.7	97.7
1966	4200	1.04	4380	20	220	4778	3.8	91.7
1967	4300	0.88	3800	84	51	3504	12.6	108.5
1968	4700	0.89	4200	213	1	3818	16.1	110
1969	4200	0.93	3900	2	1	4178	8	93.3
1970	4200	0.9	3800	0	458	3888	18.1	97.7
1971	4000	0.82	3300	0	1000	4389	14	75.2
1972	4300	1.06	4550	0	736	5316	11	85.6
1973	4300	1.07	4600	0	785	5535	7.9	83.1
1974	4270	1.1	4700	0	1450	5743	14.7	81.8
1975	5200	1.07	5575	0	1440	6367	23.4	87.6
1976	5000	1.1	5500	0	850	6450	21.6	85.3
1977	5000	1	5025	0	1500	6525	21.3	77
1978	5000	1.11	5525	0	710	6925	10.1	79.8
1979	5275	1.15	6050	0	1187	7350	8	82.3
1980	5925	1	5925	0	1896	7225	16.4	82
1981	6250	1.07	6675	0	1377	8075	14.4	82.7
1982	6200	1.08	6675	0	1405	8275	11.7	80.7
1983	5925	0.99	5875	0	3700	8575	22.9	68.5
1984	5960	1.04	6200	0	3200	9750	16.6	63.6
1985	6200	1.07	6625	0	2200	9525	9.6	69.5
1986	6300	1.2	7550	0	2500	9350	17.3	80.8
1987	6591	1.15	7600	0	4000	10200	29.6	74.5
1988	6150	1.18	7265	0	3200	10365	30.1	70.1
1989	6260	0.96	6010	0	5200	11635	23.1	51.6
1990	6500	1.23	8000	0	4000	11200	31.2	71.4
1991	6650	1.34	8900	0	2450	11640	27.5	76.5
1992	6930	1.47	10200	0	3002	13000	26.2	78.5
1993	7190	1.49	10700	0	3504	13300	32.4	80.5
1994	6780	1.61	10900	0	3647	14000	34.7	77.9
1995	6570	1.72	11300	0	3029	14500	32.3	77.9
1996	6360	1.73	11000	10	5567	15500	37	71
1997	6300	1.59	10000	10	5211	15500	35.1	64.5
1998	6600	1.82	12000	18	2345	15400	28.4	77.9
1999	6000	1.42	8500	0	7221	15700	27.9	54.1
2000	6000	1.25	7500	0	6284	15200	19.6	49.3
2001	6000	1.25	7500	0	6500	15000	13.2	50

표 11 국별 밀 통계(이라크)

연도	생산면적 (천ha)	단수 (톤/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율 (%)	자급률 (%)
1961	1109	0.81	896	37	345	1204	0	74.4
1962	1284	0.86	1104	25	0	1079	0	102.3
1963	1365	0.43	580	0	201	781	0	74.3
1964	1309	0.68	885	2	100	983	0	90
1965	1364	0.76	1036	1	6	1041	0	99.5
1966	1317	0.63	832	7	126	951	0	87.5
1967	1505	0.68	1029	1	315	1343	0	76.6
1968	1684	0.91	1537	8	70	1599	0	96.1
1969	1661	0.71	1183	10	87	1260	0	93.9
1970	1759	0.7	1236	11	156	1381	0	89.5
1971	948	0.87	822	0	258	1080	0	76.1
1972	1915	1.37	2625	142	13	1996	25.1	131.5
1973	1156	0.83	957	2	585	1840	10.9	52
1974	1633	0.82	1339	0	857	1946	23.1	68.8
1975	1408	0.6	845	0	543	1743	5.5	48.5
1976	1750	0.75	1312	0	911	2013	15.2	65.2
1977	857	0.81	696	0	1304	1946	18.4	35.8
1978	1496	0.61	910	0	1138	2100	14.6	43.3
1979	1750	0.85	1492	0	2300	2707	51.4	55.1
1980	1500	0.87	1300	0	1366	2700	50.3	48.1
1981	1193	0.76	902	0	1600	2700	43	33.4
1982	467	2.07	965	0	1800	2700	45.4	35.7
1983	477	1.76	841	0	3000	3600	40.7	23.4
1984	493	0.95	471	0	3000	3550	39.1	13.3
1985	1540	0.91	1406	0	1700	3500	28.4	40.2
1986	1240	0.83	1036	0	2800	3766	28.2	27.5
1987	859	0.84	722	0	3000	3700	29.3	19.5
1988	1041	0.89	929	0	3433	4433	22.9	21
1989	587	0.84	491	0	3424	3924	25.6	12.5
1990	1200	1	1200	0	124	2304	1.1	52.1
1991	1800	0.83	1500	0	2333	3233	19.3	46.4
1992	1750	0.8	1400	0	420	2420	1	57.9
1993	1850	0.92	1700	0	740	2365	4.2	71.9
1994	1750	0.86	1500	0	690	2190	4.6	68.5
1995	1750	0.86	1500	0	515	2015	5	74.4
1996	1700	0.82	1400	100	1140	2440	4.1	57.4
1997	1500	0.73	1100	0	2707	3807	2.6	28.9
1998	1600	0.81	1300	0	2028	3328	3	39.1
1999	1300	0.62	800	0	2650	3450	2.9	23.2
2000	1300	0.62	800	0	3300	4100	2.4	19.5
2001	1350	0.67	900	0	3300	4200	2.4	21.4

표 12 국별 밀 통계(터키)

연도	생산면적 (천ha)	단수 (톤/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율 (%)	자급률 (%)
1961	7717	0.82	6336	1	1287	7517	11.5	84.3
1962	7800	0.87	6804	0	583	7345	12.3	92.6
1963	7850	1	7892	0	371	7494	22.3	105.3
1964	7870	0.89	7000	0	276	7703	16.2	90.9
1965	7900	0.94	7430	0	163	7959	11.1	93.3
1966	7950	1.03	8200	0	308	8210	14.3	99.9
1967	8000	1.13	9000	0	28	8680	17.6	103.7
1968	8100	1.04	8400	2	504	8916	17	94.2
1969	8300	1	8300	0	939	9351	15	88.8
1970	8200	0.98	8000	0	898	9198	12	87
1971	8200	1.3	10700	17	559	9642	28	111
1972	8100	1.17	9500	560	26	9666	20.7	98.3
1973	8100	0.99	8000	19	519	9300	12.9	86
1974	8200	1.01	8300	0	1059	9459	11.6	87.8
1975	8500	1.35	11500	0	20	10020	25.9	114.8
1976	8600	1.51	13000	52	0	10648	46	122.1
1977	8500	1.59	13500	1149	6	11457	50.6	117.8
1978	8600	1.55	13300	2023	0	11777	45	112.9
1979	8600	1.51	13000	440	0	12260	45.7	106
1980	8600	1.51	13000	530	0	12870	40.4	101
1981	8500	1.55	13200	337	748	13411	40.3	98.4
1982	8600	1.61	13800	573	49	13676	36.6	100.9
1983	8700	1.53	13300	600	350	13750	31.3	96.7
1984	8600	1.55	13300	517	1048	13631	33	97.6
1985	8600	1.48	12700	112	980	13768	31.2	92.2
1986	8700	1.61	14000	52	500	14048	33.5	99.7
1987	8700	1.49	13000	933	160	14027	20.7	92.7
1988	8750	1.83	16000	1643	277	14134	24.1	113.2
1989	8700	1.44	12500	194	3698	14196	36.7	88
1990	8750	1.83	16000	546	291	14500	44.5	110.3
1991	8800	1.88	16500	6241	172	14764	14.4	111.8
1992	8800	1.76	15500	2019	997	15097	9.9	102.7
1993	8850	1.86	16500	1065	650	15086	16.6	109.4
1994	8600	1.71	14700	1810	500	15190	4.6	96.8
1995	8550	1.81	15500	1054	2100	16046	7.5	96.6
1996	8450	1.89	16000	967	2630	16363	15.3	97.8
1997	8500	1.88	16000	1324	1775	16751	13.1	95.5
1998	8550	2.11	18000	2626	1862	16886	15.1	106.6
1999	8650	1.91	16500	2163	1470	16777	9.4	98.3
2000	8700	2.01	17500	1601	450	16699	7.4	104.8
2001	8600	1.74	15000	500	1000	16300	2.6	92

표 13 국별 밀 통계(사우디아라비아)

연도	생산면적 (천ha)	단수 (톤/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율 (%)	자급률 (%)
1961	89	1.43	127	0	111	238	0	53.4
1962	93	1.45	135	0	158	293	0	46.1
1963	100	1.35	135	0	147	282	0	47.9
1964	85	1.47	125	0	190	315	0	39.7
1965	100	1.48	148	0	200	348	0	42.5
1966	100	1.49	149	0	240	389	0	38.3
1967	100	1.5	150	0	182	332	0	45.2
1968	100	1.3	130	0	140	270	0	48.1
1969	100	1.5	150	0	290	440	0	34.1
1970	100	1.35	135	0	363	498	0	27.1
1971	122	0.59	72	0	294	366	0	19.7
1972	125	0.31	39	0	347	386	0	10.1
1973	125	0.5	63	0	351	414	0	15.2
1974	45	2	90	0	531	621	0	14.5
1975	53	3.64	193	0	598	691	14.5	27.9
1976	57	3.6	205	0	467	672	14.9	30.5
1977	58	2.59	150	1	767	716	41.9	20.9
1978	58	3.02	175	2	599	772	38.9	22.7
1979	85	1.76	150	2	1293	841	107	17.8
1980	67	2.1	141	27	732	846	106.4	16.7
1981	60	3.12	187	7	581	961	72.8	19.5
1982	137	3.01	412	10	686	988	81	41.7
1983	264	2.69	710	11	327	1026	78	69.2
1984	470	2.98	1402	7	206	1101	118.1	127.3
1985	500	4.09	2047	78	87	1156	190.3	177.1
1986	556	4.12	2290	1584	105	1211	148.6	189.1
1987	602	4.4	2649	2436	204	1467	51.1	180.6
1988	726	4.5	3267	1956	154	1465	51.2	223
1989	780	4.43	3452	1578	161	1538	81.1	224.4
1990	771	4.64	3580	1661	184	1600	109.4	223.8
1991	864	4.55	3934	2317	329	1655	123.3	237.7
1992	907	4.49	4070	2490	222	1693	127	240.4
1993	795	4.53	3600	2015	71	1706	123.1	211
1994	599	4.47	2679	1651	46	1845	72	145.2
1995	465	4.3	2000	181	67	1815	77.1	110.2
1996	265	4.53	1200	0	68	1768	50.9	67.9
1997	336	5.36	1800	0	110	1785	57.4	100.8
1998	335	5.37	1800	0	33	1783	60.3	101
1999	400	4.5	1800	0	100	1850	60.8	97.3
2000	400	4.5	1800	0	100	1850	63.5	97.3
2001	400	4.5	1800	0	100	1900	61.8	94.7

표 14 국별 밀 통계(시리아)

연도	생산면적 (천ha)	단수 (톤/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율 (%)	자급률 (%)
1961	1315	0.58	757	22	212	947	0	79.9
1962	1417	0.97	1374	276	30	1128	0	121.8
1963	1559	0.76	1190	118	4	1076	0	110.6
1964	1476	0.75	1100	193	19	926	0	118.8
1965	1214	0.86	1044	8	70	1106	0	94.4
1966	854	0.65	559	0	345	904	0	61.8
1967	1201	0.87	1049	0	283	1332	0	78.8
1968	891	0.67	600	0	193	793	0	75.7
1969	1221	0.82	1003	0	251	1254	0	80
1970	1341	0.47	625	0	612	1237	0	50.5
1971	1252	0.68	846	0	698	1300	18.8	65.1
1972	1354	1.34	1808	250	215	1275	58.2	141.8
1973	1100	0.54	593	0	233	1325	18.3	44.8
1974	1537	1.06	1630	2	191	1450	42.2	112.4
1975	1692	0.92	1550	0	222	1615	47.6	96
1976	1590	1.13	1790	10	316	1806	58.6	99.1
1977	1528	0.8	1217	3	664	2500	17.5	48.7
1978	1555	1.06	1651	0	434	1950	29.3	84.7
1979	1445	0.91	1320	0	521	2000	20.6	66
1980	1449	1.54	2238	0	511	2512	25.9	89.1
1981	1255	1.66	2087	0	294	2600	16.6	80.3
1982	1222	1.27	1556	0	430	2227	8.5	69.9
1983	1290	1.25	1612	0	935	2450	11.7	65.8
1984	1107	0.96	1068	0	1280	2400	9.8	44.5
1985	1265	1.36	1714	0	850	2500	12	68.6
1986	1350	1.37	1850	0	509	2409	10.3	76.8
1987	1183	1.4	1656	0	1263	2914	8.7	56.8
1988	1100	1.88	2067	0	885	2705	18.5	76.4
1989	744	1.21	900	0	1283	2333	15.1	38.6
1990	1100	1.57	1726	0	1726	3051	24.6	56.6
1991	1269	1.69	2140	0	808	2813	31.5	76.1
1992	1380	2.03	2800	0	732	2925	51.1	95.7
1993	1385	2.45	3400	6	520	3064	76.5	111
1994	1550	2.39	3700	0	250	3100	103	119.3
1995	1560	2.68	4184	364	39	3150	123.9	132.8
1996	1619	2.52	4080	460	14	3137	140.3	130.1
1997	1761	1.72	3031	796	25	3160	110.8	95.9
1998	1721	2.39	4112	411	106	3107	135.2	132.3
1999	1200	2.17	2600	82	75	3123	117.5	83.2
2000	1200	2.25	2700	0	50	3120	105.8	86.5
2001	1500	3	4500	300	50	3200	135.9	140.6

자료: <http://www.worldfood.muses.tottori-u.ac.jp>에서
(성명환 mhsung@krei.re.kr 02-3299-4366 농산업경제연구센터)

M45-23 세계농업뉴스 제23호 (2002. 7)

등 록 제5-10호 (1979. 5. 25)

인 쇄 2002년 7월

발 행 2002년 7월

발행인 이정환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224 팩시밀리 02-965-6950

<http://www.krei.re.kr>

인쇄처 경희정보인쇄(주) 02-2263-7534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